

2000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行政管理局

日 時 2000年 6月27日(火) 10時01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10時01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와 궂은 장마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병원 폐업철폐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동무사소 감사를 필두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업무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로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감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대책 및 대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및 찬사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

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문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을 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委員과 關係公務員께
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行政管理局 金賢植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습
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
니다.”

2000年 6月 27日

行政管理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總務課長 李東明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旅券課長 任炯正

○委員長 李憲九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
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金賢植 行
政管理局長으로부터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
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과
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제 옆은 李東明 總務課長입니다.

林晔宅 企劃豫算課長입니다.

林星圭 民願奉仕課長입니다.

李秀傑 文化振興課長입니다.

任炯正 旅券課長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안녕하세요? 行政管
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 의
원의 집단 폐업사태에 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李
憲九 委員長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우리
구 지역에서는 큰 불편 없이 정상적인 진료로 되
었음은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 우리 구로서는 수해방지대책에 전 행정력을 경
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종로구를 아
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언과 체질직로 구
정을 도와주시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
102회 상반기 제1회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0年度 主要業務推進現況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
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질의하기 전
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
는 핸드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과는 2000년도 5월
30일까지 집행한 체육행사와 관련한 역시 구민의
날 행사 포함입니다. 지출결의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委員長 李憲九 아니죠. 2000년 5월 30일 그러
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입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委員長 李憲九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 책자 내용에 보면 '종로'라는 '중'자가 쇠북 '鐘'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종로의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초대 때부터 9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문서를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千相旭委員님께서 현재 저희 종로구라는 쇠북 '鐘'자에 대해서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구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조례 개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여러 가지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감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千相旭委員 본 위원이 누차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지난해에 인왕산을, 인왕산이 원래가 어진 '仁'자에 임금 '王'자인데 일본 사람들이 종로를, 종로도 원래가 술잔 '鍾'이 아니고 쇠북 '鐘'자인데 술잔 '鍾'자로 바꿔버리고 인왕산도 임금 '王'자 옆에 날 '日'을 붙여서 왕성할 '旺'자로 바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왕산을 고쳤습니다. 임금 '王'자로 고쳤습니다. 고친 지가 벌써 4,5년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조를 같이 해서 종로구도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심지어 언론지에서도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종로를 술잔 '鍾'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도 타 부서에서는 아직도 술잔 '鍾'자로 쓰는 부서가 많습니다. 차라리 한글로 쓰든가 우리 종로구라도 통일

해야 되고 또 우리 종로구청장이 이것은 행정적으로 법적 뒷받침과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다른 기관에 대해서 또는 자치단체나 언론기관에 대해서 문서로 보내서 이 종로의 고유명사가 일본 사람들의 어떤 악랄한 장난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옛 고유명사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문서를 어떻게 보낸다든가 또는 전화 상으로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글자를 바꾸자는 걸로. 원래의 쇠북 '鐘'자로 고유명사를 고치자는 노력을 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千相旭委員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부 정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토지, 지적, 호적 기타 공부의 정리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협조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정상적인 조례나 법률 개정 전에 타 기관이나 언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고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법률적인 것 외 일반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통일되게끔 협조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千相旭委員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의사전달이 잘 안되신 모양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분야부터 먼저 고치자는 얘깁니다. 거기에 질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들이 이의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쳐 쓰다보면 자연적으로 종로는 바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셨으면 앞으로 당장이라도 언론사부터 먼저 통보해주시고 우리가 일반인이 사용하는 명함에도 종로라는 주소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쇠북 '鐘'자를 쓸 수 있게끔 우리 종로사랑지 홍보지를 통해, 종로사랑도 잘 되어 있습니다. 쇠북 '鐘'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서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잘 보면 쇠북 '鐘'자입니다. 그러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나오는 종로사랑지에 1면에다 톱기사로 해서 모든 종로인이 옛 고귀한 우리 종로 되찾기 운동을 펼치자는 그러한 캠페인을 펼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꼭 실행해 주십시오. 제가 10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문화재 관계인데, 문화진흥과죠?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우리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말이죠 문화재 양각 심의라는 게 있고 문화재 심의가 있죠? 그것이 근자에 와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종로에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종로 전체가 가히 종합박물관이다시피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주변의 건축심의를 상당부분이 심사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왜 모르고 있었느냐면 행정 당국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 **李秀傑** 課長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된 날짜를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진흥과에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신속히 우리 의원들에게도 통보해줘야 되고 그것이 개정되기 전에 사전에 저지했어야 됩니다. 저는 언제 알았느냐면 며칠 전에 MBC 방송에 나오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바로 공덕귀가, 과거 대통령을 했던 윤보선씨 맥입니다. 그곳이 아흔아홉칸 집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곳이 서울시 보존문화재인데 담 하나 바로 붙어있습니다. 지면이 붙어있는 그 집이 지상 4층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쪽에 가회동에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가는 지역이고 그런데 보도를 보고 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사실상 4층 건물이 거의 골조가 완성

되어 있더라구요. 올라가보니까 공덕귀가가 완전히 정원은 물론이고 그 집의 안방까지도 시야에 들어오더라 애깁니다. 그것은 문화재가 훼손된 겁니다. 그러한 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종로에 그것도 종로가 소위 정도 600년의 발상지인데 건축심의를 할 때 문화재 양각심의를 없애고 문화재심의를 왜 없앴느냐, 이것은 종로를 망치는 애깁니다. 이것은 행정 당국에서도 우리에게 보고를 안해주고 사전에 알았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지합니다. 잘못된 법입니다.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허가해줬느냐 했더니 법으로 허가가 된다는 애깁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양각심의를 없애고 또 문화재심의 자체가 없어졌다는 애깁니다. 그러면 건축심의를 왜 하느냐, 이것은 저쪽에 해당되는 애깁니다마는 건축심의 자체가 현장감각을 참으로 해서 법률적으로는 허용되나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4층 건물 신축이 허용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법이 허용할 수 있다면 심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건만 맞으면 바로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건축심의를 왜 하느냐 하는 애깁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는 앞으로는 정도 600년이라는 이름이 상실될 수 있는 위기에 와 있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千相旭委員**님 지적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경에 건축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양각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심의제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입수를 해서 각 위원님에게 일단 나눠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72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때는 좀 늦었더라도 관련부서에 개정이라든지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그런 법을 개정할 때는 사

전에 예고하지 않습니까? 예고를 하는데 그 예고에 대한 것을 정보입수를 전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자료는 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 부서가 무슨 부서입니까? 관계되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진흥 쪽에서 개정한 겁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이번에 공덕귀가 주변에 주상복합건물 허가는 저희 건축과에서 소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허가는 그런데 법률, 건축법, 문화재 주변의 건축심의 규정을 바꾸는 주관 행정부서가 어디냐는 겁니다. 국가 행정부서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문화재관리청입니다.

○千相旭委員 문화재관리청입니까? 거기에다 공문을 보내서 재개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법예고 했을 때에 그것을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것은 지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개정을 촉구해야 되고 또 허가부서에, 말하자면 종로구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말이죠 비록 양각심의가 없어지고 문화재심의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심의할 때 말이죠 철저히 심의를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건축과에서는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니까 그것을 문화진흥과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협조를 통해서 그런 몰상식한 건축심의가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건축심의 위원이라는 분들이 공무원 외에 일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千相旭委員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심의한 것 같으니까 그 심의위원회 앞으로도 공한을 보내서 종로의 어떠한 역사를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조치하신 다음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千相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문화진흥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많은 예산을 들어서 3억 8천으로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준공까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저희들이 개관을 5월 12일자로 했고

○金正大委員 됐어요. 5월 12일이고 착공은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작년 12월 27일인가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여기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서둘렀습니다.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金正大委員 빨리 시작이라도 해놓으면, 사실 제가 바로 밑에서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사실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월 중순 안으로 빨리 준공을 하려고 굉장히 서둘러서 새벽까지 일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야로 일했습니다. 그렇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왜 야간작업까지도 해서 빨리 서둘러야 했느냐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저희들이년도폐쇄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물론 이월조치가 필요해서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빨리 준공을 위해서 개관을 서둘렀었습니다.

○金正大委員 우리 문화진흥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간이 있으니까 오늘이 아니면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웃지 마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렀던 문화의 집이 수익 들어서 만든 집을 몇 개월 문을 닫아놨었죠? 폐쇄했었죠? 준공을 빨리 하지 않고 왜 5월 12일까지 미뤄서 개관을 했는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운영비 확보가 그때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늦었습니다.

○**金正大委員** 운영비 확보도 안된 것을 왜 그렇게 빨리 준공을 하려고 주야로 일을 했던 것하고 너무 상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랄까 내용적으로 준비 없는 그런 걸로 비쳐져서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해도 두 시간을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또 보니까 주요 답변을 많이 할 분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하니깐 조금 제가 줄이겠습니다. 중앙 예산이 1억 9천이고 자치 예산이 1억 9천 총 3억 8천인데 총 소요된 마지막 투자액이 얼마죠? 얼른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충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3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3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속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바빠요. 우리 의정 활동을 하는 데도 구의원도 바쁩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3분의 1을 잘라서 줄 테니까 강당을 더 늘리라고 우리 주민 자치위원회에서도 허락까지도 했는데 동의까지 받아서 했을 때 예산이 필요하다, 추경으로 하든지 예산이 없어서 늘리지 못한다, 또 바쁘게 준공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그것을 총 3억 8천이라는 예산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예산이 필요없다고, 분명히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왜 제가 또 지나간 뒤에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앞으로 종로구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선에서 밀이나 워나 이분들이 너무 안이하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웃전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건지 의회 경시풍조가 깊더라 제가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직접 매달려서까지 대화해서까지도 요청을 했었는데 아주 번복이 심하더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에, 우리 송인1동 물론 종로에는 문화의 집이 하나뿐입니다. 지금 3억 5천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입간판이라고 그러니까? 종로구 문화의 집이라고 아주

크게 예를 들어서 은평구라든가 몇 군데 가보면 그 문화의 집 한 500m나 1km 전방에다 은평구민이 다 볼 수 있는 곳에다 간판을 인테리어를 잘 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는 어떻습니까? 간판을 애들 돌배기 키만큼 50cm나 80cm짜리로 해가지고 송인1동 마을금고 입구 현관 입구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이들 뺨이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마을금고가 분명히 세를 봤어요. 마을금고 앞에 이리 갔다가 화장실 앞으로 갔다가 이것이 과연 종로구에 하나뿐인 문화의 집 간판이냐구요.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입간판은 이동식으로

○**金正大委員** 이동식이면 거기에다 밑에다 롤러를 달지 그랬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연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시간이,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10분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연말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좀 각성하셔서 해주십시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알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리고 취미교실에 대해서 짧게 좀 묻겠습니다. 취미교실이 명륜동과 송인1동이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 예고된, 원래는 7월 1일입니다마는 행사부로부터 수십번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온 걸로 널뛰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동사무소 폐지론부터 시작해서 축소론 하다가 안되니까 복지 어찌고저찌고 되어온 것을 우리 의회 일등이나 집행부에서도 보기가 한심스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일관해서 여기고 있는 사실이기에 때문에 송인1동과 명륜동이 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정해지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취미교실에 전면 수강료를 다 받으라고 이래 가지고 계속 받다보니까 공짜로 하는 데도

많고싼 데도 있고 해서 다 가버리니까 취미교실이 텅 비어버려요. 물론 부자동네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마는 가난한 동네에 있다보니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천만원을 증액해서 세종로동이 통합되고 나서 세종로 취미교실과 명륜동과 승인1동에 특별히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증액시켜 놓은 게 있는데 그 예산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예산 집행이 거의 안되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문화진흥과장님 뵈기가 너무 힘이 들어. 국장님보다도 너무 힘이 들어, 내가 볼 때. 그래서 수개월만에 아까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급해서 지출해 주신다고 그랬죠? 요청이 들어온다면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승인1동 취미교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1년 중 취미교실 운영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1동에서는 아직 제출이 안되어서 지금이라도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치는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감사장이라고 해서 피해가시는 말씀을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성질이 나니까. 내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여러 번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도 까발리면 우리 공무원들끼리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시정을 하고 빨리빨리 해주세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어제 동 감사를 모동을 나갔어요. 물론 우리 동료 의원이 직능단체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문고협의회가 있죠? 모 동을 보니까 45만원, 50만원씩 해서 해화동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해화동 국민은행인가 한빛은행 계좌로 45만원, 5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쓰지 않아요?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된 거냐니까 통장을 가져와봐라, 바르게살기 각 직능단체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 보다보

니까 마지막에 그것이 나오는데 이런 돈은 아직 지출결의도 안되고 그냥 통장으로 입금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는 재무과에 있는지 알았어요. 돈에 관계되는 것은 재무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문화진흥과에 있대요. 그 통장이. 사실입니까? 45만원 업무추진비 또 50만원 도서구입비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확인해보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서면으로 해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달입니다. 예산편성을 해놓은 지가 언제인데 2000년도 새마을문고협의회, 부녀회 등 업무추진비 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화동에 112-29- 이렇게 해서 해화동 지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직원이나 동장은 전혀 이 돈을 몰라요. 그러면 이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했더니 문화진흥과인지 재무과인지 가지고 있다, 재무과 직원 연락해라, 재무과 직원은 '우리는 모릅니다. 문화진흥과에 있을 겁니다.' 문화진흥과는 통장으로 배정만 해놓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게 문고회에 예산은 이렇게 막 문화진흥과에서 그냥 조금 표현이 다릅니까마는 곤도리 해도 되는 건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문이 있었죠? 이것이 6월달에 내려간 공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101쪽에 아예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더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101쪽에 새마을문고 이용자 및 도서대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개 동에서 왜 2개 동은 없습니까? 이용자도 없고 대출자도 없고 2개 동이 없어요. 우리가 행정동이 분명히 19개 동입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1천명이 넘고 어떤 데는 삼삼십명도 안되고 이게 어느 나라 식이에요? 2개 동은 없는데 아직 그것도 관심 밖입니까? 워낙 행사가 많으시다니까 챙기기가 좀 부담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 뒤에 계장 한 분 거들어줘봐요. 답변을

못해요? 2개 동이 없습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전부터 확인만 해본다면, 과장님! 제 말 한 마디만 더 들어보십시오. 문고협의회가 구성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동이 다소 있습니다. 아까 사실대로 말한다고 선서까지 하셨는데 자꾸 말하다 보면 말이 많이 나올까봐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여러 개 동이 문고협의회가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것을 동을 관장하는 동정계하고 협력해서 조직을 하려면 세분화해 가지고 잘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전부 얼렁뚱땅이예요. 내가 보니까 모 동에는 말이죠. 아예 협의회가 없어요. 그런데 왜 돈이 배정이 되었습니까? 되어 있지도 않은 데다 왜 배정을 했어요? 95만원씩. 뒤의 계장님 없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 1개 동씩 동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대충대충 하려고 했는데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챙기다 보니까 문고회로 이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고회 회원이 몇 명이나 도서가 몇 권이나 했더니 책은 몇 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19개 동인데 17개 동만 내놓고 2개 동은 아예 그림자도 없어 여기는 서대문구예요? 동대문구예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누락된 사유는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리고 표현상 이용자 및 대출현황이라고 해왔는데 대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출이라는 것은 은행이나 금융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책을 빌려주는 것은 대여로 해야 되는데 대출이라는 뜻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일반적으로 대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어원이 조금 그렇죠? 대출이라고

하면 문고회에서 엄청난 것을 대출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대출이라는 어원이 상당히 그래요. 대출을 빌려주는 대어를 표현한 것 아닙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金正大委員 이것은 조금 고쳤으면 합니다. 내가 보기에 대출이라는 말을 책 빌려주는 것에 쓰는 것을 난 처음 들어요. 어떻게 제 말에 긍정하십시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일반적으로 도서대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여라는 용어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이용자는 뭐고 대출은 뭡니까? 대출해 가는 사람이 이용자 아니에요? 중복성 아닙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이용자는 와서 보는 사람이고 대출은 빌려 가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도서를 빌려 가는 사람들을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렇게 쓰는지 몰라도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金正大委員 제가 중요한 책을 동대문시장 밑에 가면 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대문 바로 옆에도 헌책가게가 많이 있는데 책을 빌리는데 대출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지금 각 도서관에서 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대여라는 용어는 물품이나 물건을 빌려 가는 것을 대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굳이 그렇게 쓰고 싶다면 그렇게 쓰십시오.

○委員長 李憲九 대출 대여 이것은 다시 연구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고

○金正大委員 저에게 주어진 10분이 넘는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수고도 대단히 많으시고 또 오늘 질문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주어진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아주 좋은 질문하면서 약 19분 소요가 되었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아까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이 보낸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얼마나 불성실한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여기 보면 30쪽을 한번 보세요. 서부여성문화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옥인동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옥인동 178번지 1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청운동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세요. 버드나무약수터가 몇 번지에 있습니까? 여기 면적 400㎡에다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고쳐서 나한테 제출하세요. 이것 전부 엉터리입니다. 자료가.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그러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신속하게 갖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되면 저희들 감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뒤에서 서면으로 해줘도 갖다주지 않고 해서 말이죠. 문화진흥과에 대해서 송인동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고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지금 李東奎委員께서 요청한 자료 아시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문화의 집 운영서류

○委員長 李憲九 또 千相旭委員이 아까 자료요청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5월 30일까지 구민체육대회까지 포함해서 체육행사와 관련한 지출결의서 및 첨부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준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빨리 가져오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이 행정감사장에서 그 년도의 지적사항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행정감사장에서 우리가 질의했던 사항이 답변으로 끝나고 시정된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제가 동행정감사 때 민방위훈련 면제 및 제외자를 처리할 때는 분명히 사유를 달아서 심의위원회 결의를 받아서 하라고 수십 번을 질타를 했는데 금년에도 동에 나가 보니까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시정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민방위 담당하시는 분 만나왔어요?

○總務課長 李東明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동장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교육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총무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요지를 몰라요. 우리가 민방위편성을 연초에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민방위다 이 사람은 학생이다 이 사람은 자율방법대원이니까 면제대상이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면제자가 나왔을 때는 육하원칙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명단만 자율방법대원이다 딱 붙여놓고 면제를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명단만 갖다놓고 면제를 시켜줍니까? 민방위 담당이 그렇게 권력이 세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면제를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시키고 그렇습니까? 자율방법대원이 되어 가지고 민방위교육에 면제를 받으려면 파출소장이 민방위대원이라는 공문을 첨부해놓고 방위협의회의 의결을 붙여서 기안해서 놔줘야 그 사람이 민방위교육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지 공문서에 명단만 올려놓고 면제를 시키면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3년째 바로 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얘기

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민방위대원 감독을 하지 말고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정이 안된 이유를 물었지 무슨 교육을 동사무소에서 가르치고 구청에서 한다는 답변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1년, 2년, 3년씩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되고 그 자료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자꾸 감사장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지적된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지 1년, 2년, 3년씩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된다 그런 얘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차량보험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종합보험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시정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차량문제

○**總務課長 李東明** 허락하신다면 자료를 확실하게 파악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포를 보면 모 동을 보면 어느 통은 257세대 이렇게 나온 통이 있고 어느 통은 88세대 나온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을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구조조정이 안된 이유가 뭐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조정은 '99년도, 2000년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6월 16일날 그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가오는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조례 개정취지에 맞추고 통장자격에 맞춰서 다시 통반조정을 하거끔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시행하시겠습니까? 또 금년을 넘길 겁니까? 금년 내로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7월말까지 조정결과를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우리 과장님 여기 감사장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60세 이상된 통장이 123명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60세 이상된 통장들도 교체를 해야죠.

○**總務課長 李東明** 통장자격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해서 명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각 동장들한테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본 위원이 무악동을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무악동을 보니까 통장이 13분이예요. 13분인데 60세 이하로 전부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 동장님은 조례에 따라서 하자 없이 해놓은 동이 있고 어느 동은 한번 공문이 내려오면 이행을 하지 않는 동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악동 같은 데는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통장들을 전원 교체해 놓았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무악동의 경우는 현대아파트가 금년초에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洪起瑞委員**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60세 이상된 사람들이 사표를 내 가지고 교체된 통이 6개통입니다. 그러면 무악동이라고 물의가 안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무악동을 보니까 통장들 분포가 제대로 되었어요. 요즘에 여성들을 대우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여성을 30% 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도 지금 현재 우리 종로만 유달리 여성통장수가 적어요. 무악동도 보니까 13명중에 4명을 여성통장으로 임용을 했어요. 그러면 무악동장은 어떻게 이렇게 구

조조정을 잘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동장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악동장은 우리 종로 동장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동장입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그저 구청에서 공문 한 장 보내면 동장이 그것을 읽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그러지 않는 동장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장 한 명에 1년 동안 나가는 예산이 164만원입니다. 거기에 장학금은 놔두고 학비보조금까지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349명인데 여기에서 100명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도 1억 6,4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데 절감을 해서 사실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겁니다. 꼭 필요한 요소에 통장이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 과장님! 분명히 이번 7월 말일까지 이 감사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7월말까지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운영위원장! 정확하게 10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신1동도 60세 이상이 전부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승인1동은 어제 보니까 여덟 분이나 고령입니다. 저보다 더 나이 많이 자신 분들이 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기가 내년 2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8일에는 60세 이하로 전부 바꿀 수 있느냐 하고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동장이 참으로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총무과장님도 기득권 세력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과감히 탈피해야지 세상이 바로 됩니다. 바꾸세요. 바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연일 연속되는

정례회다 행정사무감사다 해 가지고 관계되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시민행정위원장이신 李憲九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하고 성의있는 서류제출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서너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첫번째 종로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에 관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0년 1월 구민회관 운영위원회 1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조례로 개정한 바가 있죠?

○總務課長 李東明 예,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올린 부서가 어느 부서였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저희 총무과였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지난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하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구민회관 운영위원회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이 사회하고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은 답변서를 누가 어떻게 갖다줬는지 몰라도 대단히 실례되는 답변입니다. 그렇게 흡사한 것 같았으면 뭐하러 구민회관운영위원회설치조례 제정해달라고 올렸습니까? 답변하십시오.

○總務課長 李東明 예,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는 조례 제정이 아니고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는 회관은 종로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제16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가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때하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

영했을 때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게 관리운영권을 위탁해서 맡겼다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시민행정위원장님! 대단히 불성실한 부분이 나옵니다.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내주신 자료에 보면 32쪽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분명히 “구민회관 조례를 제정한 것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개정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보고 감사를 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맨날 뜯어고치라고 이거를 해준 겁니까?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憲九 行政管理局長님! 조금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큰일났습니다. 정식으로 경고합니다. 더 이상 자료가 불성실하면 그 과장님에게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셨으니까 이 법규집하고 조례개정집을 지난번에 당사자이신 元背洙係長님하고 저희들이 전부 맞춰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이것은 정말 들 필요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었고 우리 盧張鐸 副區廳長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구태여 이것을 안 들 필요도 없다 필요하다면 꼭 뒤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두지 않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운영위원회는 구청장의 결정을 자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직접 운영을 안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우리 조례개정 해 달라고 올렸을 때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찾아

보니까 분명히 그랬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죄송합니다라는 작년의 심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정할 당시에 총무과장에 있지는 않았습시다라는 제가 본 것으로 해 가지고는 구민회관 조례 5조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올린 안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조에 보면 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로구구민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본 결과는 위탁할 경우에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안에는,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그러니까 이 관계는 여러 의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으로 답변 대신하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통장현황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60세 이상 통장 숫자가 지금 우리 중로구 전체에 12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44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맞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우리 통장수가 총 349명이구요, 123명이면 %로 몇 %가 됩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죠. 30%가 조금 상회한다고 봐야 되는데 60세 이상의 통장수가 30%가 넘는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와 또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의지에 부적합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난번 우리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속기록에 남긴 바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님 그때 답변을 하시면서 저희들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각 동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공문은 다 내려왔는데 60세 이상의 통장을 ‘가급적이면’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내려보냈죠? 공문을 못을 꼭 박은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라는 쪽을 방향을 잡으셨죠?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라는 내용보다는 우리 조례에 맞게 구조조정을 하고

○**李東奎委員** 조례는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60세 이상 꼭 하지 말라고 되어 있던가요?

○**總務課長 李東明** 그렇지 않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가급적이란 용어를 쓰신 건가요?

○**總務課長 李東明** 공문에는 가급적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李東奎委員** 내가 내용 자체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공문을 내가 어제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공문에는 뭐라고 내려보냈습니까? 그 공문 있으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공문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고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적격한 통장을 임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李東奎委員**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總務課長 李東明** 적격한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그 표현은 안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60세 이상은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안 하셨다 이 말이죠? 어제 동장 얘기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洪起瑞委員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문을 동사무소에 내려보냈을 때 동장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좀더 그런 부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짚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꼭 통장문제는 좀 적극성을 갖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겠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 委員長님과 洪起瑞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사례를 각 동장에게 전파해 가지고 이번에는 보다 내용이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

다.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몇 분 남았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니다. 59쪽 보시면 민방위교육,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과내용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저께 동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민방위교육 관련대장을 전체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각 동에 있는 민방위 관련대장에 관계된 서류를 전부다 확인을 해보니까 상·하반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이번 주까지 저희 구청에서 각 동대, 직장대 민방위 신고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이 끝나면 각 동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우리 과장님! 답변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지난 '99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잘 아시겠지만 민방위교육은 이제 민방위과가 구조조정 관계로 직제개편 되면서 총무과로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살피지 못한 점 널리 헤아려주시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잘못 되었죠? 업무과약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까 하고 상급기관인 행정관리국에다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에 있는 직원들이 밥먹고 놀고 있습니다. 9급, 8급, 7급들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최소한도, 행정관리국장님! 이를테면 말이죠 일개 종로구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 사람들 놀고 있는가 아닌가 성향도 과약을 하시고 업무를 제대로 과약을 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도 모르고 있으니 작년엔 이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무과로 바뀌었잖아

요? 업무과약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업무과약을 못했다면 대단히 모순된 거예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지금 李東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에 물론 李東奎委員님이 보신 일부 그런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은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일하다가 보면 피곤해서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잘 챙겨서 그분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시야하고 저희 동장이나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李東奎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얘기이겠습니까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밥먹고 놀고 시간만 되면 세비 나오면 세비 타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예요. 한심할 정도입니다. 좀 관심있게 관찰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동감사를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해서 지금 발급한 게 7월 1일부터는 새 주민등록증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적체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19개 동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민등록이 필요할 때는 새 주민등록증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권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교체를 안해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자체가 어디에서는 400명 이상 문제가 발생된 지역도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 차원에서는 그런 새로운 주민등록증 교부를 안해가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수월하게 한다든가 대안에 대해서

○**總務課長 李東明** 예,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대한 교부는 저희 전체 통계에서 92% 정도 됩니다. 7% 정도가 미교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인을 받는데요 우리가 교부를 해주기 위해서 일요일날도 직원이 나와서 교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인지 장기 여행자나 출타자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지간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환자 같은 경우는 교부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 공통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는 7%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100% 교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그러한 해외 장기체류자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으면서도 신규 주민등록증을 교체를 안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령하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하겠지만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 외국에서는 고액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도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전에 대비해서 그런 어떤 불상사가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조치를 해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李東奎委員님과 洪起瑞委員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민방위를 3번 이상 비상훈련에 참석을 안하게 되면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과태료로 청구하게 되어 있죠? 법이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 그렇습니다.

○鄭泰淳委員 그런데 어느 동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과태료 청구를 해서 부과한 데가 있고 또 나머지 1개 동은 16명이 훈련에 참석을 안해서 왜 이 사람들을 고발조치 안하고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 유효기간이 있고 횡수가 한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 참석을 못한 사람 열여섯 사람을 부과해서 아픈 고충을 주는 것보다는 한번 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훈련에 참석하게 해서 과태료를 청구를 안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저는 부분적으로는 이게 그러면 어떤 개인의 공무원의 월권행위냐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법적인 것을 확인해봤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이 어떤 직원에 대해서 그것은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그런 어떤 사례가 전개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청구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고무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꼭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보다도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병행해서 그런 부분을 장려하면 지금 아마 민방위 같은 경우에 참석을 못한 사람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례가 된다고 봐서 모범사례가 되고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칭송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모범사례고 다른 공무원이나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근무자들한테 이런 사례를 보도 하셔서 해주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예, 고맙습니다.

○鄭泰淳委員 그리고 통반장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가서 보니까 인구 7천명 되는 데가 12개 통이고 인구 5천명 되는 데가 11개 통이 되는 데가 있어서 누차 의원님들이 통장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28개 통에서 12개 통씩 통장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령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특히 보수적인 지역같은 경우는 통장이 본인

이 '에이, 까짓거 치사해서 내놓는다' 하면서도 막상 내놓으려고 하면 섭섭해서 내놓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문제가 통장을 교체할 때 공직자로서 동장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인원이 없어서 본인이 맡지 않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안점을 앞으로 고지서 송달도 통장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편요금 부담 때문에 그렇게 전환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런 사유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라든지 질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데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고 지적받은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 鄭泰淳委員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입니다. 우리 鄭泰淳委員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통장을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통은 한 55세대를 관장하는 통이 있고 어느 통은 34세대를 관장하는 통이 있다는 그런 애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치로 해서 200세대면 200세대, 150세대면 150세대 이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구조조정을 하라는 그런 애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동은 동장들이 말을 잘 듣는 동은 인구가 1만명이 되더라도 12명 11명으로 통장을 구조조정을 해놓고 어느 동은 인구 5천명이 되는데 삼십몇 개 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이 있다는 애깁니다. 그런 부분을 구조조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고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민방위 통지서를 돌리는 것을 한번 동에다 확인을 해보세요. 수령중하고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나도 안 받

있습니다. 그냥 갖다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통장들이 30년 40년 되다보니까 안일한 생각이 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질책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통반장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해서 이제는 그 질의를 좀 그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평창동 安載弘委員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예비비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는 6억 2,854만 5,000원입니다.

○**安載弘委員** 보통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어떤 경우에 집행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대개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비비는 긴급재난상황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그렇다면 재해가 나거나 말씀에 의하면 예산 초과지출이 있을 때 쓴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다시 한 번

○**安載弘委員**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예산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그런 뜻은 아니고 1년 동안에 살림을 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보통 지방채 이자가 지금 2억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있다면 '99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98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한 게 '98년 11월인가 그렇죠? '98년에 90억이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98년에 지방채 40억을 발행했습니다.

○**安載弘委員** 50억은 언제 발행했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50억은 '99년 5월 30일

○**安載弘委員**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된다면 '98년 11월에 40억을 발행했고 '99년 5월에 지방채 50억을 발행해서 90억의 지방채를 쓰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그때 당시에 예비비에서 이자를 지급한 것은 IMF 상황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이자 부담을 할 그런 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예비비로 이자를 상환했습니다.

○**安載弘委員** IMF는 '97년 11월이고 '98년 예산은 '99년도에 집행한 것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그 영향이 그때까지 미쳤습니다.

○**安載弘委員**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이자를 지불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安載弘委員** 그러면 예비비의 기본적인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원칙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그때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安載弘委員** 또한 종로문화원 건물 개보수비로 약 3,6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그것은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려야

○安載弘委員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총괄 관리하지 않나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집행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문화진흥과장에게 여쭙보겠는데요 종로문화원 개보수비로 3,600만원을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비비에서 집행한 건데요 그렇게 사용하신 그때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기본적으로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원은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파출소 통폐합에 따라서 현재 문화원 위치인 안국파출소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을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런 판단입니다. 이자를 납부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에 쓰라는 예비비가 아니라는 생각은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재해나 그야말로 뽀뽀한 예산에서 정말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99년도 여러분들이 한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말이죠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굉장한 액수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금액이 불용되고 있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 민간이전경비로 '99년도 예산을 3억 1,274만원을 편성했죠? 민간이전경비로 3억 1,274만원을 편성하셨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대개 불용액 사유는 사전계획변경이 되거나 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거나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거나 집행잔액이 있을 때 대개 불용액이 생기는데 3,990만원을 예산 절감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구요. 그렇다면 민간

이전경비가 새마을 관련단체나 바르게살기나 또는 체육계 진흥이나 또는 방역활동비 이런 데에 쓰이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3,990만원은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0% 절감 원칙에 따라서 절감을 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예산 절감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같은 비용을 지출할 때 그야말로 소위 원가에 대한 개념에서 보자면 덜 쓰고 절감한 것인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10%씩 공제가 된 것에 따라서 절감을 한 거네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安載弘委員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약 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기대에서 질문을 한 건데 전혀 예상 밖의 답변입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지난 3·1절날 새천년 종로만세의 날 그때 각 동에 인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 교통비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금양비를 지급했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동감사에 가보니까 일인당 3,000원씩 전부 지불했던데 그것이 정당한 겁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 날이 공휴일이고 해서 필요한 식비 여기에 교통비

○委員長 李憲九 식비가 아니라 교통비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지금 말씀하신 교통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금양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李憲九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느냐, 예산 항목에서 교통비로 인원 동원을 하기 위해서 3,000원씩 지출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공휴일이고 해서 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한 거리축제였

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줬다는 얘기는 이게 도대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어요. 아주 썩었어요. 한번 좀 챙기십시오. 제대로 챙기라고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4分 會議中止)

(13時3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2000년도에 소규모 사업비 배정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된 2개 동을 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동은 삼청동에서 빗물받이 공사하고 부암동 난간설치비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벌써 6개월이 다 갑니다. 내일 모레면 7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면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서 동장이 필요한 공사를 요청을 하면 비용을 우리 토목 관련 공사면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관련과장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장이 소규모사업을 요청하면 상반기에 이것을 빠짐없이 다 했었습니다. 앞으로 동장들한테 다시 지도감독을 해서 소규모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다시 올리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기이 각 동별로 1,000만원씩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실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조그마한 500만원 이하의 뒷골목 공사를

동장 재량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비를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돈만 여입을 해놓고 일을 안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을 안하고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지 누가 긴급을 요하는 것 500만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배정표에 보니까 각 동별로 1,000만원씩이고 부암동만 1,600만원이 내려갔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규모사업비를 줬으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안하고 동사무소 통장에 돈이 사장되어 있다 이겁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각 동의 1,000만원은 공통적으로 보안등 관리운영비로 해서 내려보낸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내려보내는데 부암동과 삼청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서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촉구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과장님! 지금 각 동별로 소규모사업 할 것이 없다 이겁니까? 그렇게 종로 뒷골목이 그만큼 보수가 잘 되어 있다 이겁니까? 동장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을 안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것 해주시오 저것 해주시오 자꾸 매달리고 있는 행정에서는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명륜3가동만 해도 동기능 전환으로 빠져서 토목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3군데 4군데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1,000만원씩 돈을 내려보냈는데 일을 안해요. 다만 보안등 수리만 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안등 수리도 토목과 사업비지만 소규모 사업비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챙겨봐야 됩니다. 제가 동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보안등 수리비도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등당 무조건 평균 3만 8,400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보안등 하나를 시설하는 데 얼마가 드느냐 그랬더니 정부 내정가가 7만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등당 예를 들어서 3만 8,000원 정도가 나간다고 그러면 1/2 정도가 수리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두 달 놔뒀다가 신설해주는 게 낫지 이런 부분적인 난맥들이 동사무소에 내려가 보면 비일비재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대 간부회의 때라도 동장들한테 채찍질을 하시고 또 안되면 소규모사업을 집행하는 동정계에서라도 불려서 이것을 채찍질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앓아 가지고 등당 하나를 수리하는 데 3만 8,000원이 집행되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洪起瑞委員님께서 지금 동에서 동장들이 현재 소규모 지역의 어려운 문제 파손된 것 이런 것들을 제때 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洪起瑞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동장들은 현재 챙긴다고 저희들 보고 받습니다마는 특별히 챙겨서 동의 아쉽고 고쳐야 될 것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洪起瑞委員** 강력하게 하세요. 17개 동에서 2개 동만 집행을 하고 15개 동이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5개 동이 하고 2개 동이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챙겨야 되고 금년도에 동기능 전환을 위해서 시설비 등 수리비로 해서 포괄비로 예산을 배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지금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9월말까지 예상해서 지금 건축과에 과업 지시만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에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러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을 다 수합해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두달 동안에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나요? 내일 모레면 7월인데

○**總務課長 李東明** 잘 아시겠지만 기능전환 사무의 이관은 9월말까지 하되 건물을 고친다든가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빨리 시행이 벌써 됐어야 했어요. 원칙적으로 7월 1일부터 동기능 전환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줄 때 포괄비로 해서 예산을 썼는데 아직까지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기이 실시하고 있는 명륜3가동 같은 경우에는 비품구입비가 포괄비에 같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고 있느냐고 했더니 19개 동 같이 할 때 일괄 구입하려고 아직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이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동의 비품 같은 시설장비는 구입을 해줘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아직 되지도 않는데 같이 함께 하겠다고 집행을 안하고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總務課長 李東明** 거기에 대해서 세종로 문화센터하고 명륜3가 문화센터는 우선 필요한 물품구매나 보수할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洪起瑞委員** 제가 음향기나 멀티미디어 같은 것을 엇그제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하고 일선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 그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다른 동들은 기능전환이 안되어 있으니까 기이 되어 있는 동의 것은 포괄비에서 떼어서 먼저 구입해서 내려보내줘야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일괄 구입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선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앓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할 때는 몇 번씩이나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한번 집행부에서 딜레이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토목분야도 그렇습니다. 1월달에 예산이 책정되면 상반기에 하면 장마 때나 동절기가 아닐 때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움켜쥐고 있다가 9월달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밤낮 12월달이 되어야 예산을 쓴다는 주민들의 다가운 눈총도 받고 그러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알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명륜3가동 것은 지금 빨리 별도로 구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9월달에 일괄적으로 같이 구입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지난번에 보수한다는 예산은 내려보냈는데

○洪起瑞委員 삼백 얼마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것은 소모품비 정도밖에 안되고 멀티미디어나 큰 것은 안 내려왔다 그겁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필요한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하지 말고 빨리 집행을 해주세요. 文化振興課長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륜3가동에 김중국가라고 있죠? 문화재로 지정된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현재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그것을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제를 해버려야지 비가 오면 비가 새 가지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흉물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차라리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한다면 정식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보수를 해서 반듯하게 해야지 그대로 놔두니까 그래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수 계획을 약 1억원으로 계상해서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오고 가는 사람들 눈살만 따갑고 그렇습니다. 이

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당초보다 초과 집행된 것이 2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불된 것입니다. 33쪽에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날짜와 사유가 나와 있는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곳이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발파식으로 견적을 넣었다가 그것이 발파가 안되니까 무진동 설계공법으로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견적을 넣을 때 주택가 한가운데를 발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넣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부분이 저희들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견적을 싸게 넣고 일단 공사를 수주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안합니까? 업자를 선정할 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입니다. 千相旭委員님이 질의하신 구민회관의 설계시에 발파식을 무진동 공법으로 했는데 당초에 무진동 공법으로 하지 않고 발파식으로 한 것은 사후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千相旭委員 계획된 의도가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제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발파식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적게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千相旭委員 국장님 말씀은 설계변경 사유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니, 사실상 그 당시에는 일반주민들도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구민회관을 짓는데 발파식으로 해도 큰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발파식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니까 무진동공법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발파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발파를 해본 적이 없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처음에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99년도에 집단민원이 나오고 나서 말썹이 있었지 않습니까?

○千相旭委員 그 당시에는 金賢植 局長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국장으로 계셨고 과장도 바뀌고 그렇지만 담당자가 바뀐 상태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지만 같은 행정관료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식의 견적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당초에 견적을 받아 심사할 때 발파식으로 견적을 넣으면 그것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공법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종로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거기는 주택가로 아파트가 즐비한데 발파공법이 가능하겠습니까? 견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발파식과 무진동 공법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 가격을 내정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견적을 조작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가서 들춰 가지고 집을 헐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건물은 다 지어져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 덩어리입니다. 하자가 수십 가지가 나오고 심지어 매점이 도난까지 당했는데 방범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깜깜하고 사람들이 다니기가 무섭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하기 곤란한 건물이 되고 말았는데 매점 도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千相旭委員 어떻게 구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죠? 그 매점이 몽땅 털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알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즉시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사람이 왕래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방범등을 설치할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전기요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거에는 주변이 밝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깜깜해서 우범지역으로 평가할 정도로, 통행을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주변이 정리되고 좋아야 할 텐데 나쁜 지역이 되었다 이런 주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설계변경을 시켜서 2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 68쪽에 보면 소송사건이 있는데 대개 패소가 많습니다. 승소는 15건이고 패소가 67건인데 우리 소송사건 때 변호사를 어떤 사람한테 의뢰를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企劃豫算課長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섯 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들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분들이 재판해서 대부분 패소가 되었다 이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변호사 자질이 나빠서 패소된 것이 아니고 헌법이나 법률위반 사항이 많습니다.

○千相旭委員 왜 헌법에 위배된 사항을 행정집행을 무리하게 했습니까? 소송비용만 날아가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위헌 판례 이것이 예시된 사항은 전부 전국적인 사항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千相旭委員 패소건 중에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패소된 것은 48건이거든요. 나머지 19건은 뭘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밑에 보면 지방세법 사치성재산 규정이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패소된 사례가 있고 재량권이 이탈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세무과에 사치성재산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패소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

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千相旭委員 그것이 2건이고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사건이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사건에 대해서 패소한 것이 12건인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千相旭委員 권한을 남용해서 이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게 되었고 구청은 소송에서 패소해서 망신을 당하고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처분소가 12건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주로 법정에서는 업소의 편을 아주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그분들 편을 많이 돕니다. 그러니까 재량권 일탈이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챙기겠습니다.

○千相旭委員 林課長!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있다고 하셨죠? 그분들에 대한 간단한 경력사항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민사소송 사건의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청에서 민사소송 사건에 딸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사항별로 건수가 10건인데 중요한 것만 내용을 발췌해서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재무제표 같은 것을 보고 받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70쪽에 대차대조표를 보면 미수수익이라는 것이 있죠? 이 미수수익이 됩니까? 왜 미수수익이 발생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위원님! 이 내용을 자세

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미수이익 발생원인하고 전기 대비 약 70%가 당기에 증액된 사유 그것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민원실장님! 95쪽 맨 하단에 민원택배제도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한 민원은 익일 다음날 퀵서비스 이용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배달” 이렇게 되어 있고 배달료는 건당 500원 되어 있는데 이 퀵서비스가 됩니까?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금년에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일인데 민간업자가 시 전체로 해서 각 구청마다 택배신청민원이 있으면 사람을 우리한테 보냅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민원을 떼어놓으면 그 사람이 와서 그 다음날 오늘 3시까지 신청하게 되면 그 이튿날 그 신청자의 집까지 배달해주는 제도입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배달료가 500원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예, 500원입니다.

○千相旭委員 500원으로 퀵서비스를 해준다 이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예.

○千相旭委員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최하 퀵서비스는 5,000원에서 2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우리도 영업실익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 하루 평균 10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시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데 500원을 받고 해준다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알아봤어요. 퀵서비스 업체에 알아보니까 최하 5,000원에서 2만원 사이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그것은 개인이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렇고 행정기관에서 지금 퀵서비스

제도를 하는 것은 통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쿼서비스 사무실에 전화를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문서를 가지고 가죠?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우리한테 택배제도로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각 구청을 돕니다. 각 구청 분을 수합해 가지고 일정 장소에 모으면 종로지역은 종로지역으로 전부 몰아서 예를 들면 강남에서 종로지역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보내주기 때문에 쿼서비스 제도하고 조금 다르죠. 수수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가능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千相旭委員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만약에 500원에 된다면 좋은 제도인데 계속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李秀傑 課長님! 왜 자료를 안 가져옵니까? 그리고 旅券課長님! 계세요? 121쪽 거기에 수입 대비 경비 출납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99년도와 2000년도. '99년도에 보면 수입 대비 지출액이 우리가 1억 9,100만원이 마이너스죠?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旅券課長 任炯正 여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9,182만 1,000원이 국고보조금에서 부족한 상황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3월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 8,000만원이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고 나머지 8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IMF 이전에 지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사실상 업무회복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이 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청 자치행정과나 또 외교통상부, 그 다음에 여론에까지 이것을 적극 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차 구조조정이 되고 있고 현재 작년도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는 이런 통지를 받았고 8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1억 9,1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했고 800만원은 보조를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확실한 내용입니까?

○旅券課長 任炯正 예, 맞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시 보조금은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旅券課長 任炯正 별도 국고보조금 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알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권과는 국고보조로 100% 충당해야 됩니다.

○旅券課長 任炯正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과에 자료 요청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千相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아직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감 받는 태도가 말이 아닙니다.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자료를 안 갖다주고 어떻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라는 애깁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라고, 편의상 물겠습니다. 편의상 앉아계신 순서대로 편의상 물을 테니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우리 林星圭課長님부터 먼저 편의상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각종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민원봉사실 기금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몇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진흥과에서는 기금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몇 가지나 됩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소득지원, 저소득가구 보조해주는 것이 있고 정확한 가짓수는 몇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그 다음에 앉으셨던 순서대로 총무과장님은

○總務課長 李東明 저희도 기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기금 관리는 없으시고, 그 다음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기획예산과장도 기금 관리 사항이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그 다음 여권과에서는 있습니까?

○旅券課長 任炯正 여권과에서도 없습니다.

○李東奎委員 없습니까? 그러면 65쪽을 봐주시겠어요? 65쪽 보시면 그중에서 우리 문화진흥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최소한도 사무관의 직급을 가지고 과장 직분으로서 앉아있으려고 하면 그 부서에 기금이 몇 가지 정도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있어야 됩니다.

○李東奎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짓수도 모르고 지금 무슨 목적으로 된지도 모르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는 주민소득지원 이것 하나입니다.

○李東奎委員 그것 하나입니까? 그러면 65쪽에 나와있는 것은 뭐죠? 그것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렇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죠. 최소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잘 들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금리가 8~9%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은 분명

히 짚었던 사항입니다. 왜 유독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금들이 8~9%밖에 못받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특혜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금리를 비싸게 주지 못해서 안달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금리를 받고 거기에서 기금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혜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없는 부서에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있는 부서에서만 얘기하시면 돼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이 사항은 저희가 공통된 사항으로 기금이 지금 변동금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금고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東奎委員 시금고하고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9%로 받아도 여기에서는 '아야' 소리 못한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율을 높게 받도록 하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李東奎委員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8~9%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변동금리니까 어떤 높을 때는 9%고 낮을 때는 8%라는 얘깁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그러면 금리를 지금 일반시중에서는 우리가 하는 보통금리도 얼마씩 받아요? 다 10%가 넘죠? 1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가 아니에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은행에서 받아들이는 갭은 현재 8~9%에 대해서는 기업금전신탁으로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빛은행이 우리 서울시금고이고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금고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혜성이나 또 특정은행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 하나 OCR이나 세금고지나 각종 기계 설비시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빛은행의 주전산기로 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금고계약을 맺을 때 한빛은행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그런 OCR이나 전반적인 각종 고지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지 구에서 특정은행을 지정하고 특혜성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행 금리로서는 기업금전신탁이 그 중에서 높다, 그리고 또 이 자금이 왔다갔다 하니까 현재로서는 그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李東奎委員 그러면 시중금리가 싸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조금 다운이 되죠.

○李東奎委員 그러면 8~9%보다 더 다운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문화진흥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께서는 변동금리라고 해서 8~9%라고 하고 높을 때는 9%고 떨어질 때는 8%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李東奎委員 그러면 내용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李東奎委員님! 재무건설 위원회에서부터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이 공공기관에서는 수익성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李東奎委員 행정관리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고. 지금 현재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화진흥과에서 얼마입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저희가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10억 5,100만원입니다.

○李東奎委員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생활안정기금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安載弘委員 議席에서 - 아니, 생활안정기금이 무슨 10억이나 돼요? 1억 8천밖에 안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李東奎委員 10억 얼마 된다는 자료를 갖다주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기금이 10억 5,100여 만원입니다.

○李東奎委員 10억 5,100여 만원의 자료를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 받은 자료 있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억 5,100만원이라는 것이 대출금을 포함한 겁니다. 대출금을 포함한 거고 대출을 제외하고 순수한 잔액으로 남아있는 기금은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10억 5천이 맞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은 3억여 원 정도 됩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현재 전체 기금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서류를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 받은 내용 있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주시고, 이자 받은 자료를 갖다주시고. 그러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65쪽하고 66쪽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99년도하고 2000년도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이자가 지금 시중은행 금리이자가 되죠?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5개월이라고 보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66쪽에는 839만 8,000원이고 65쪽에는 5,242만원이란 말이에요. 5개월을 놓고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금년도에 상반기에 9개 가구에 8천여 만원을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에 따라서 이자가

○李東奎委員 전년도 대출 나가기 전에 말씀이예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유인물 65쪽에 보시다시피 '99년도에는 5,240만원

○李東奎委員 그것은 이자발생액이 아닙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원금을 묻는 거예요. 관리하는 기금이 얼마가 있었냐구요. '99년도에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李東奎委員 그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문화진흥과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99년도에는 2억 7,500만원 이자가 4,500만원 나왔고 2000년도에는 9가구에 8,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839만 8,000원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자꾸 그러시지 말고 지금 한빛은행에 가서 가지고 잔액증명서 하나 떼어주시고 그리고 월별로 이자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 가져오세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여기에 8~9%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갖다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입씨름만 되지 안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한빛은행에 가서 잔액증명서하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것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이것은 문화진흥과 기금으로 관리하니까 지금 빨리 가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이자도 월별로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은행이자 대출이자 대비해서 가져오면 딱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李東奎委員 그러면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고 한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진흥과 105쪽에 보시면 사회체육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올 겁니다. 전년도 지급금액이 얼마예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사회체육단체 보조금이 전년도가 43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그 전년도 '98년도도 432만원이고 2000년도는 얼마 잡혔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2000년도도 동일 액수가 잡혀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지금 나가는 단체명들이 그것의 내용입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지금 사회체육단체 보조

금은 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종로구 체육이사회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체육이사회에 지급을 하고 있대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렇습니다. 체육이사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연 4회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공통된 사항입니다.

○李東奎委員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모르면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시면서, 그러면 밑에 것 보세요. 두번째 칸에 단체명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그 계가 얼마예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55번의 사항하고 54번의 사항은 내용이 틀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이 체육이사회에 1년에 4번 분기별로 나가는 것을 말씀드렸고

○李東奎委員 이사회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단체에다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습니까? 관련된 조례를 직원들이 가져와보세요. 이사회하고 생활체육단체하고 별도로 지급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56번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 밑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생활체육 취미교실의 강사로 예산 지원내역이 되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각 무슨무슨 취미교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취미교실이라고 했는데 어머니배구에 나간 것은 뭐예요? 이것도 정액보조로 되어 있나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구 운영에 330만원이 나가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배구단입니다

○李東奎委員 지금 변칙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도 없는 것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변칙 사용을 합니까? 이 돈 여기 사용하게 되어 있는 돈이에

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어머니배구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또 저희 구에 여러 가지 선양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종로구의회 우리 의원들 무슨 체육단체 하나 만들어놓을테니까 우리한테도 돈 좀 주세요. 그럴 용의가 있으세요? 왜 웃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은 뭐예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다음 장에는 금년도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취미교실하고 동에서 작년도에 운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직영한 현황은 4개 종목에 총 332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금년도는 5월달 기준으로 냈다는 얘기죠? 5월달 현재인데 5월이라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5월입니까? 4월입니까? 3월입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5월입니다.

○李東奎委員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경시했으면 이렇게 표시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라고 지금 제출해주신 겁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지금 모든 자료를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다른 부서 것을 보세요. 자료를. 5월이면 5월 기준이라고 표시를 해서 줍니다. 문화진흥과에서 한 것은 왜 표시를 안해서 주세요? 그만큼 문화진흥과에 있는 직원들은 의회를 경시하고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갖다주지도 않고 행정감사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얼마나 경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다음 장은 뭐니까? 앞쪽은 구 운영 동별 교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2000년 표시를 했고 107 쪽은 2000년 동별로 집계가 된 현황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청운동 풍물이라고 해놓은 것은 뭐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취

미교실로 풍물놀이로 해서 저희들이 100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李東奎委員 풍물교실 취미교실로 잡혀있나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잡혀만 있는 거예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좋습니다. 자료를 빨리 갖다주세요.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0쪽에 60번 공연장 설치현황 및 재해예방 명령 조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명령실적에 과태료를 징수했다는 표시를 했다는 거죠? 컴퓨터게임장 과태료 징수했다는 것을 표시해놓은 겁니까? 공연장 설치현황 16개소 31개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극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극장 안에 상영관이 몇 개소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해가지고 총 16개소에 31개의 공연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영화상영관 10개 25개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25편을 상영했다는 말입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25개관이라는 애입니다.

○李東奎委員 10개 극장이라니까. 예, 그렇게 표시한 거군요. 여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극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좌석수라든지 방화, 한국영화 연중 상영일수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바로 즉각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 잠시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劉燦鍾委員! 질문하십시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청사 대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청사 대지면적은 일반 평수로 2,623.78평입니다.

○**劉燦鍾委員**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종로구 인구밀도는 얼마나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것은 계수로 나눠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종로구 구청사 직원밀도는 얼마나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우리가 1,300여 명이 있으니까 계수로 나눠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건평이 3천 몇백평 되니까 3천평 곱하기 333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연건평은 3,924명이 맞습니다.

○**劉燦鍾委員** 국장님의 견해는 구청사가 비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대단히 구청사 환경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95년도입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의회와 협조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특별히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劉燦鍾委員** 민원인이나 직원들의 불편한 점은 어떤 것으로 조사되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첫째는 구청사가 협소하니까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을 각 의원님들에게 하나씩 드러야 되는데 사무실이 비좁아서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청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劉燦鍾委員** 물론 시설물들이 노후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지 보수에 따른 시공업체 간에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잡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특별한 지침이라도 받으셨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지금 저희 구청장께서는 일반적으로 내부에 개설 때만 결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결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과장, 국장, 부구청장 결재권이 있기 때문에 청장이 터치할 권한이 없는 걸로 알려드립니다.

○**劉燦鍾委員** 종로구 사무전결규칙 제7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청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협의도 아니고 합의를 하는 행정관리국장의 막대한 권한 행사를 하시는 국장께서는 구청 전반에 대한 사항에 누구보다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전결 업무사항 중의 하나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5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국장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26조제1항에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비상재해를 적용하시는 겁니까? 수의계약에 관해서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수의계약은 구에서는 제가 옛날 재무국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야 됩니다. 단 하나 지금 현재 제26조제1항에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등 이런 사항도 됩니다마는 특정인의 기술이라든지 용역, 특정업체의 노하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관련법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제5항에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은요? 본 위원이 제출한 요구서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구 발주공사가 수의계약이라 함은 3,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주내역을 검토해보니까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히 높은 것 같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견적서 등 구비서류가 부실하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견적서에는 경쟁업체 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29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천장 텍스공사 자료 안 갖다 드렸는가요? 저한테 제출한 서류 국장한테 갖다주세요. 중복이 되었는데 전부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1번부터 21번까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물품이나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권의 수의계약 서류를 보았는데 비교견적이 첨부된 견적서를 보면 회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보기에다 필체가 너무 비슷합니다. 혹여 본 위원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필적감정을 의뢰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고 또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집행한 서류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고 필적감정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둘째, 종로구사무처리규칙의 내부 위임사항에 보면 담당과 공통 적용사항을 보면 제6조제15항 '다'를 보면 현장도급비가 1억 미만은 국장 전결이고, 9조에 물건의 제조구매 및 임대차 기타 품위유형 '다'호 1건당 1,000만원 이상 국장 전결이고, '나'호에 1건당 1,000만원 미만은 과장 전결이고, 3항 관급 조달물자는 국장 전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총무과장 전결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또한 종로구직무대리규칙 제1조 목적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각급 기관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기 위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전결 때마다 자리를 비우셨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일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사무실에 6시 30분까지 출근해서 하루종일 거의가 전일근무조를 하지도 않고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일요일도 나오고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고도 11시 이렇게 되어서야 가고 그랬는데 일부러 자리를 비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휴가도 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 있죠? 그것을 저하고 같이 보시면서 1페이지부터 제1청사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전결이 행정관리국장 吳炳漢 局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2,827만원 그렇죠? 전결사항이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이죠? 吳炳漢 局長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99년도면 그 당시 行政管理局長이

○**劉燦鍾委員** 금액이 얼마면 행정관리국장 전결사항입니까? 1억이 행정관리국장 전결사항이죠? 공사에 대해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 2번 이것도 행정관리국 전결로 吳炳漢 局長입니다. 공사금액이 605만원, 다음 3번도 마찬가지로 4번도 吳炳漢 行政管理局長 전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보세요. 공사금액이 973만 5,000원인데 어떻게 행정관리국장 전결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세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劉燦鍾委員** 별도로 하시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전결규정을 보고

○**劉燦鍾委員** 무슨 전결규정을 봐요? 이런 미미한 공사와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총무과장이 전결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직권남용 아니요? 국장이 사인을 했다고 그러면

직무태만이고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것을 이제서야 보고 말이야 정책실명제 처리지침을 봐요. 2000년 3월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 총무과 여기서 국장님! 뭘 보시냐 하면, 8번으로 넘어갑시다. 1청사 형광등 교체 840만원짜리, 이 건 또 어떻게 1억 미만인데도 행정관리국장 전결로 되어 있어요? 결재가 고무줄입니까? 8번 결재를 보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전결이죠?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 도장을 찍었어요. 서울시에서 행정문서에 실명표기를 하라고 했어요. 고건 시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도장을 찍어도 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찍어줄 수도 있고

○**劉燦鍾委員** 찍어줄 수 있다니요? 이 건 지시 사항이에요. 지시사항을 어긴다면 안되죠. 여기 실명표기로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金賢植 局長의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도장을 찍어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의 전결사항인데 어떻게 총무과장이 전결을 해요? 이 건 직권남용 아니요. 그리고 국장님은 직무태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10번을 보세요. 10번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사인을 하셨어요. 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고 사인을 하는 이유는 뭐니까? 2,955만원 짜리인데 제2별관 옥상방수공사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입니다. 현재 도장이나 사인에 대해서 별 의미 없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劉燦鍾委員**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회계처리 부분에서는 당연히 도장을 찍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실명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원래 행정처리는 실명사인을 하는데 회계서류는 도장을 찍도록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劉燦鍾委員** 이것이 재무회계규칙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니, 우리 회계서류에 한해서는

○**劉燦鍾委員** 당연하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를 들어 도장을 찍는

것이 분명하게 이럴 경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결재권자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잘못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결재할 사항을 총무과장이 결재해 버리고 전결해 버리고 어느 건은 행정관리국장이 전결하면서 도장을 찍어 버리고 도장을 찍는 것은 책임회피용입니까? 고건 시장이 행정문서에 실명표기 하라고 전 구청이다 하고 있는데 아마 종로구청에서만 행정관리국장이 도장을 찍을 거예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도장찍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어디서 많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지금 각종 사인이 불필요할 때 도장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시장의 지침을 어기면 징계예요. 징계.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렇지 않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리고 이것 보세요. 11번 구청사 본관 내벽도장공사 4,952만원짜리 이것은 어떻게 해서 盧張鐸 副區廳長까지 결재를 했어요? 부구청장 전결사항입니까? 1억 미만은 담당국장 전결사항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 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외벽도색공사는 당초에는

○**劉燦鍾委員** 전결권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결이 누구냐 이겁니다. 왜 부구청장 전결이 됐느냐 이거예요. 전결규정을 보세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당초에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劉燦鍾委員** 공사와 관련해서 1억 미만은 국장님 전결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86페이지 보세요. 사무전결규칙 결재권자가 고무줄이고 자치법규집을 보세요. 공사건당 도급비 1억 미만 국장, 부구청장 1억 이상 써져 있잖아요. 과장이 무슨 전결사항이 있어요?

과장은 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시공감독의 지정, 설계범위내 인부고용, 기 계획에 의한 물자배정 등등만 하게 되어 있지 안 그래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주나 이런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일도 없고 앞으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까. 단 이 공사도급비에 대한 전결권자는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본 구청사 외벽도색 공사는 부구청장 결재로 한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이것은 감사실 감사를 할 때 설계금액이 다소 잘못되었다 해서 시정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4,952만 2,000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발주나 이런 것을 앞으로 투명하게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전결권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고 저도 행정관리국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마는 사실상 직원들을 믿고 그대로 결재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서 이런 사항도 가능하면 공개경쟁의 원칙 하에서 업무를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총무과장님! 보충답변을 해주십시오. 전결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공사에 관련해서는 총무과장이 절대 전결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무태만이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그냥 중징계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상당히 자리를 많이 피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책임과 권한의 이양을 통한 자율업무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결처리의 부담을 전가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만약에 후자일 경우를 택한다면 직무태만으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의 지침사항까지도 무시하고 도장으로 결재하고 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국장 전결사항인데도 과장이 전결을 하고 때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담당국장이 서명날인하고 정말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항간에 우리 국장님은 낮에는 사무실이 많이 잠겨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입니다. 낮

에 사무실이 잠겨 있을 수는 없고 항상 행정관리 국장실은 오픈이 되어 있고 동행정이나 현장출장을 갈 경우에는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구청에서 제일 오래 잔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마 劉燦鍾委員님 오실 때 제가 자리에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鄭泰淳委員님도 저녁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가 같이 11시 12시까지 운동을 여러 번 같이 했는데 아마 구에서는 제가 너무 오래 잔류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일찍 나가시라고 권유를 하고 이러는데 鄭泰淳委員님한테 한번 여쭙보십시오. 제가 제일 오래 있었을 겁니다.

○**劉燦鍾委員** 제가 항상 국장님 방을 드나들어도 열려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퇴근시간 6시부터 업무 결재하신다는 얘기도 들리고 열대지방 사람들처럼 뜨거운 낮에는 힘을 충전하고 시원한 저녁에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써에스타(Siesta)와 서머타임제(Summer Time) 실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전 서머타임제(Summer Time)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단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니가 몸뚱아리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있는 한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돋보이게 하고 또 주민들의 문화 정서생활을 함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제가 못 뵈더라도 항상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항상 반기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제게 격려를 해주시면 힘이 더 나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운동도 하시는 鄭泰淳委員님은 “웁소 웁소” 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늦게 퇴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간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의 격려로써 저희들 힘을 북돋아주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劉燦鍾委員** 끝으로 아날로그 행정과 디지털 행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요새 아날로그는 소리가 음향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날로그입니다. 디지

털은 이진법 아닙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말이 디지털이지 몸체는 아날로그가 많습니다. 저도 서울대 행정대학에서 디지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일층 위원님들의 뜻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劉燦鍾委員 디지털 논리가 부족합니다. 아날로그 행정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이런 결재서류,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이 아날로그 행정이고 디지털 행정이 됩니까? 구체적이고 투명한 쌍방의 행정이 디지털입니다. 行政管理局長님의 큰 역할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해량해 주시기 바라구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머니 같은 자상함과 섬세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劉燦鍾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정확히 27분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이 돋보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文化振興課長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에 23번 낙원동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봤습니다.

○朴鍾植委員 낙원동발전협의회 300만원 나가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文化振興課長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낙원동발전협의회에 300만원은 제가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낙원동에 차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지역상가 활성화와 지역의 어떤 문화 발전을 위한 보조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朴鍾植委員 보조금 형식으로 나간 거잖아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朴鍾植委員 왜 내가 이것을 여쭙보느냐 하면 지금 낙원동보다는 전부 주요 문화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대학로인데 대학로에도 발전추

진협의회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로발전추진협의회는 아무런 보조랄지 구청에서 협조를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로발전추진협의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시고 내가 그 지역 구의원일 뿐만 아니라 발전추진협의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낙원동발전협의회는 지원이 나가는데 대학로발전추진협의회는 아무 것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대학로발전추진협의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알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알고 계실텐데 시교부금이나 시비, 나한테 공문 온 것을 보니까 우리 동송동 환경개선지구 지정 받은 곳의 지구에 노인정을 짓는다고 시비 1억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공문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왜 사회복지과에서도 몰라요? '주택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동송동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노인정 부지로 3평 자투리땅을 확보해놓은 것이 있거든. 노인정을 지으려고 추진해왔었는데 공문이 느닷없이 서울시 교부금 시비로 1억 예산 책정되었다고 왔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2000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집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것을 몰라요.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노인네들이 160명인가 노인정 빨리 지어달라고 진정서도 구청에 올렸고 상당히 성화를 하니깐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이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朴鍾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10분씩만 하라고 하니깐 자주 돌아와서 좋기는 합니다. 68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千相旭委員

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소송수행현황과 승패 및 패소사유 현황인데 여기를 보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을 위한 '99년 4월 29일 해서 48건이나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독촉장이 느닷없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지적과에 물었더니 주민들이 소송한 건은 제외가 되지만 소송하지 않은 건은 나갑니다. 이런 답변이란 말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청이 뻥히 패할 줄 알면서 내보낸다는 자체는 법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8월 29일 이전에 이미 소송제기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 한해서는 실익이 있는데 기존의 그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소유자에 한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거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위헌이 났으면 그 법률에 대한 위헌이 난 것"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인데 예를 들어서 투쟁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득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투쟁한 사람은 마지막에 실익을 보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투쟁을 한다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확정력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도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은 이해가 안돼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러니까 투쟁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이익이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서울시민들한테 선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행법으로써는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현행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뜯어고쳐야죠. 그렇잖아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것은 법을 고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그러기 때문에 재판이 자꾸 일어나 가지고 패소가 되니까 우리 구비가 시세가 새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洪起瑞委員님이 세밀하게 보시면 이해가 있으실줄 압니다.

○**洪起瑞委員** 뭐가 세밀하게 보면 이해가 있어요? 잘못된 거지. 116쪽을 봐주세요. 문화진흥과장님! 지금 종로문화원 지원내역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승인등에 있는 문화의 집에서는 어떤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여기 나와있는 생활영어, 문예창작, 장구반, 민요반 이렇게 나와있는데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종로문화원에서는 8개 반을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승인1동 청사에 있는 종로문화의 집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도의 취미의 일환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종로문화원에서는 좀더 창의적인 것을 해가지고 해야지 다른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강좌를 같이 중복만 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애깁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의 집에서는 예를 들면 사군자반이라든가 서예반 같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생활영어 같은 것은 전부다 중복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지원하는 데에다만 지원을 해주잖아요? 문화원에만 지원해서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활동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800명 정도를 자원봉사를 시켰다고 했죠? 종로거리 깨끗한 환경 이러한 분야에 투입을 했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 사인을 해줍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2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자기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원봉사를 구실로 가지고 와서 도장만 받아가는 형식적인 자원봉사가 된다면 그 학생의 교육면으로도 그것은 불합리한 그런 것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 시킬 때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보육원 아니면 독거노인가정 같은 데를 알선해서 자원봉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미리 빨리 체득할 수 있는 현장의 교육이 되어야지 그저 와가지고 쓰레기 하나나 줍고 시간만 채우고 2시간 3시간 하루에 사인을 해주게 되면 학생들에게 교육이 아니라 나쁜 습성만 가르쳐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대해 어떤 실행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앞으로 이 자원봉사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이웃, 문화재관리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지난번에 6월 5일인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 이하 몇 분이 문혜요양원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서강여학교 학생들이 가 두 차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하고 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그런 쪽에 많이 알선을 해서 또 거기에 시간상이나 거리상이나 차편이 제대로 안된다면 우리 종로구 관할에도 보면 독거노인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배정을 해서 독거노인 가정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분들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행심도 길러주고 모든 면에서 산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아직 10분이 안되었죠? 그리고 매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만 되면 대한매일신문 배달사고 때문에 이 행정감사장에서 거론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매일신문 배달사고가 몇 %나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洪起瑞委員 그렇다면 파악이 잘못되었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총 몇 매 나갑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대한매일이 통장님한테 전부 1,100매 나가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전부 1,100매 나가는데 배달사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신문으로 민원 제기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작년에도 이십 몇 % 나왔는데 금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파악을 제대로 안했는지 아니면 대한매일을 감싸기 위한 행정 집행부의 두둔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한 건도 없다고 보시냐는 얘기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현재로서는 어떤 신고가 제가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한매일에 대해서 신고된 것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신고는 우리 통반장들이 절대 안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이걸 전부 무료로 주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달에 한번 들어와도 고마운 거고 한달에 한번 들어와도 고맷게 느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통반장들이 우리 구비로 사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인식을 안하는 거예요. 대한매일에서 통반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공짜로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아마 배달사고 신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줘야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알겠습니다. 차후에 확인을 해서 배달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한매일 지국이라든지 동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도 15% 정도는 배달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15%면 1,100부에서 15%면 얼마입니까? 130 내지 140부 되죠? 그러면 한 달에 9,000원이예요. 한 부에 9,000원이면 1년이면 천이삼백만원 정도가 그냥 밖으로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돈만 새나가지 실질적으로 신문을 구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대한매일 신문사에게 요구를 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달사고가 난만큼 1년분이라도 단 500부가 되었던 600부가 되었든 무가지로 해서 우리 통반장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했더니 하겠다고 했어요. 문화진흥과장이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랬으면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우리 예산과장이 부서장으로 왔으면 대한매일 신문사하고 절충을 해서 무가지로 300매가 되었던 500매가 되었던 받아가지고 우리 통반장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몇 %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낮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자꾸 노력을 해봐가지고 그저 돈만 쥐버리고 예산 승인할 때만 우리가 닥달하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함홍차사예요. 그런 대안이 없어요? 매일신문사를 추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한 뒤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대한매일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빠른 시간 내에 속히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신문들은 자기가 직접 배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배달하니까 배달과 수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매일신문은 배달만 하고 말일만 되면 돈이 딱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안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하도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하니깐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옛날에 조사할 때는 40% 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해보니까 15% 정도 되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개선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던 내용에 연속해서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말이죠 극장들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용들이 지금 저한테 왔는데 행정처분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겠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지금 위원님! 한국영화 의무상영 그 자료 말입니까?

○李東奎委員 예, 그렇습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1년에 146일을 우리 영화를 상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별로 의무상영일수가 부족한 극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치고 처분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거기에서 뭘 발견했다면 이 사람들이 '청문한 사항에 대해서 끝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진술하여 주십시오'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 난에 보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지도 없이, 아무런 공지도 없다는 얘깁니다. 통보를 안 했다는 얘기겠죠. '공지도 없이 단축일수를 10일을 축소함으로써 부족일수가 더 많아져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래놓고 밑에다가 다른 글씨로, 아마 우리 직원들 글씨인 것 같

아요. '행정처분시 비수기를 선택하여 행정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써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극장에서 그와 같은 식으로 내용이 또 있는데 그것이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처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라서 극장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휴관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청문 때 얘기하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극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나갑니까?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알아냅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극장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극장 관계자들한테 진술을 듣고 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영화 의무상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극장주뿐만 아니라 영화인들 모두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우리 종로에 소재한 극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李東奎委員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냈어요. '99년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46일에서 10일간 단축해 가지고 136일로 확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정이 되었다고 했으나 '10여 년 전부터 126일로 해오던 바 한국영화의 제작편수 및 기타 사항의 변경 등 단 4 내지 5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99년 12월 8일에 그것을 연락 받은 거예요. '146일을 지키라는 것은 극장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극장 운영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청문했어요. 왜 통보하지 않았나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영화를 1년에 며칠 상영하러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극장협회라든지 직접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사항을 개별 통보를 극장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거나 이렇지 않고 차후에 자기들이 저희한테

극장별로 '1년에 며칠 상영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통지가 되어오면 사실인가를 확인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작년도부터 어떠한 국민 개혁 차원에서 공연신고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완화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극장별로 어떤 이러한 기초적인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지 못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李東奎委員 극장에서 사전에 자료를 못 받으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자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지침이 나오거나 시행령이라든가 현행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99년 12월 8일날 그때서야 연락을 하고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 관계는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별도로 보고드릴 게 아니라 사실대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네요. '처음 업무를 접하다보니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군요'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위반한 극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통지 내려온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쪽 물었다 저쪽 물었다 하니까 아주 우리 과장님께서 한 개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말이지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치러나가겠어요? 갑갑합니다. 아까 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고 갑디다마는 정말 갑갑하네요.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에 미달된 극장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찾은 것이 '99년도에 그와 같은 법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 극장마다 의무사항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통지를 했어야 되는 사항을 소홀히 했다는 얘 기초. 왜 안했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런데 금년도 5월 9일자로 음반및비디오유통에 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처분기준이 아직 그 당시에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李東奎委員 처분을 뭐하고 간에 시행령이 떨어지거나 현행법을 만들었으면 바로 통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왜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느냐는 얘 기초.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시행규칙이나 같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이 되면 시행령이 개정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규칙이 개정되는데 대부분 처분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의 규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어떻게 '99년 12월 8일날 통지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말입니까?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그 이전에 개정했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이게 '99년도예요? '99년도인데 '99년 12월 8일날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 전에 통보를 하나도 안 해주고 예고도 안 해주고 그리고 바로 행정처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한번 보고 나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통장이랑 다 가져오셨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통장 관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시간 끝자는 거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그것 보기 전에는 안 끝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저하고 같이 보고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깁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사하고 지방공단 중에서 공단에 속하겠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준용되죠? 지방공기업법에 저촉을 받느냐는 거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받았습시다.

○安載弘委員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이 결산검사 결과로 나온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어디에서 어떤 법인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어느 법인에서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회계법인입니다. 우리회계법인.

○安載弘委員 이 자료에는 1기와 2기 이렇게 구분되어 나뉘져 있는데 전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있거든요. 기타 재무제표를 볼 수 있나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볼 수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자료를 좀 내주시고, 여차피 지방공기업은 경영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결국은 기업의 경제성과 그 다음에 행정의 공공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을 위해서 기여했느냐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9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99년 1월에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팔각정하고 관련지어서 재입찰을 할 때 '99년 1월 15일하고 2000년 1월 29일날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99년에는 13억 1,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12억 6,370만원인가에 낙찰이 되었습

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입찰을 볼 때 주차장을 포함해서 입찰을 봤어요. 그랬죠? 그렇다면 '99년도에 주차장 수입이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약 2억 1,000만원의 주차장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입찰을 하지 않았다면 순수하게 13억 1,100만원에다 주차장 수입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약 15억 2,000만원이 정상적인 수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2000년에는 4개월이 빠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99년 4월 1일부터 주차장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약 2억 1,0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면 이용객수가 점점 늘어나는 중간 추세로 본다면 주차장하고 관련된 3억이라는 돈과 최초에 계약한 13억을 합하면 16억이 돼요. 도합 16억 6,00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낙찰이 된 금액은 12억 6,370만원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악팔각정을 재입찰하게 된 동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99년 1월 15일에 13억 1,12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그동안에 과도한 위탁료 부담 문제로 중도에서 위탁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다시

○安載弘委員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과도한 입찰가?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99년 1월 15일 남궁혜경이라는 분이 13억 1,12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던 중에 과도한 위탁료 문제로 중도에서 본인이 위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따라서 동년 1월 15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세 사람이 입찰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신동에 거주하는 황숙자라는 분께서 주차장 포함해 가지고 12억 6,370만원에 최종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당초 입찰금액하고 나중에 재입찰한 금액의 차이가 났고, 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줘서 구 세입에 손실을 가져왔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팔각정을 민간에 위탁하고 주차장은 공단이 직영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소 측에서는 비싼 주차료 때문에 손님이 없다는 문제를 자주 제기했습니다. 주차료가 비싸니까 손님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시민들도 팔각정을 이용하는데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료 징수는 부담하다는 불만이 차츰 고조되어 이런 민원이 자주 되어 가지고 도대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단은 주차료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차로 30분당 당초 1,000원씩 받았는데 1시간에 1,000원씩 받는다는 조건으로 업소 측에서도 위탁해서 시민들과 공단의 직접적인 마찰도 줄이고 또 업주 측의 불만도 우리가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후사정을 고려해서 낙찰자 선정과 예정가격 산정에는 저희 구로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의문이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초에 13억 1,100만원에 낙찰을 시켰을 때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즉 말하자면 적어도 예정가격 미만이면 낙찰이 되지 않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99년도 1월달에 입찰 볼 때의 가격과 2000년도에 입찰 볼 때 가격이 준 이유는 예정가격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신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에 맞아야 낙찰을 받아야요. 예정가격 미만이면 낙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본다 하더라도 '99년도 1월에 13억 1,100만원이었는데 2000년 1월 29일에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12억 6,370만원으로 준다면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정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정가격은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서

○安載弘委員 당연하죠. 당연히 감정평가 당국

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99년도 1월의 감정평가 가격하고 2000년의 감정평가 가격이 달랐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주차장 예정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낙찰이 되었으니까 공개해도 되잖아요? 주차장 예정가격은 얼마였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주차장 예정가격은 3억 5,400만원입니다. 5년동안에

○安載弘委員 5년동안에 3억 5,400만원이요? 5년동안에요? 그건 확실해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이것 확실해요? 정확하게 맞아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맞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5년간 3억 5,400만원을 12억 6,370만원에서 빼면 팔각정 본체에 대한 예정가가 되나요? 그러면 약 9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낙찰가하고 비교해서 예정가를 보면 지금 13억 1,100만원에 낙찰된 가격하고 지금 낙찰된 가격 12억 6,370만원을 보면 팔각정 본체만 보더라도 9억이란 말이에요. 최초로 낙찰을 받은 금액과 4억 2천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유는 뭐예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응찰했던 남궁혜경이라는 분이 과다한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응찰을 할 때 예정가는 얼마입니까? 예정가격 조서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잘못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그때 당시의 예정가격은 9억 8,060만원입니다.

○安載弘委員 감정평가서를 보고 읽으신 건가요? 자료를 복사해서 주실래요? 그러니까 '99년도 1월달 예정가하고 2000년도 1월달의 예정가하고.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 3억 5,400만원이면 5년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7,0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보고서에 의하면

'99년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차장 수입에 2억 1,000만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9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차장 수입이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 주차장 사용료가 2억 1,000만원인데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팔각정 자체가 개업을 한 지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이 안된 시점이지요. 그런데 9개월 동안 주차장 수입이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예정가가 3억 5,400만원이에요. 5년간,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책임자로서 이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안되는데 왜 주차장을 '99년 수익이 2억 1,000만원이었는데 5년간 주차장 예정가를 3억 5,40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뭘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당초에 주차료를 30분당 1,000원을 받았는데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1시간에 1,0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 수입이 상대적으로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줄었다 하더라도 단순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50%가 줄었다 하더라도 팔각정이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유일한 도시공원 속의 잘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대수가 날이 갈수록 주차대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남궁혜경이라는 사람을 자꾸 언급을 하는데 남궁혜경이가 1월 15일날 낙찰을 받은 건 사실인데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허가증을 보면 황숙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남궁혜경이가 낙찰을 받아서 황숙자라는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또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조건을 위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계약서에는 낙찰자가 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궁혜경이는 낙찰을 봤고 실질적인 사업자는 황숙자가 되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묵인을 했거나 방조했다고 보는데 어때세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재미있는 게 2000년 1월 29일날 낙

찰을 받은 사람 또한 황숙자예요. 그 남편은 종로구 공영주차장을 2개나 운영하는 한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企劃豫算課長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저는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가를 산정해서 경영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 13억 1,100만원이라는 돈에 낙찰된 팔각정을 1년도 채 운영하지 않았는데 왜 제한된 경쟁입찰을 통해서 동일한 인물에게 낙찰을 시켜주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의 요지예요. 지금 분명히 과장께서는 남궁혜경씨와 황숙자의 관계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모를 수도 있죠. 담당업무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제 질문의 요지는 13억 1,100만원짜리를 왜 주차장 3억 5,400만원을 포함해서 9억에 낙찰을 시켜주었느냐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 관리의 주체라면 그 책임을 물어라 이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방공기업법에서도 권장하는 사안이라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유재산관리에 소홀하고 또한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므로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이나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企劃豫算課長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를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요즘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더니 금년에 들어와서는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48억 1,000만원을 별도로 완전히 떼어

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그쪽에서도 세입을 잡고 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그렇게 한 것도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종로구에 시설관리공단이 하나 있어서 구민생활관하고 구민회관 기타 주차장시설, 매점시설을 관리하는데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코미디 같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사실 행정관리국장이나 주무과장은 정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답변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분명히 저희가 조사를 하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분명하잖아요. 13억짜리를 갖다가 주차장을 포함해서 12억에 준다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시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의당 이것은 주무과에서야 관리책임만 있지 실제로 입찰을 했거나 낙찰을 시키거나 관리계약서를 했거나 또는 어떤 영업과 관련된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재량이고 기획팀의 일이니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것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공단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믿고 있는데 오늘 安載弘委員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꼭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문화진흥과 직원들 혹시 은행에서 이자 % 빼은 거 있죠? 없어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가지러 갔습니다.

○李東奎委員 가져왔었는데 또 가지러 가요? 이것이 말이죠. 5월달 6월 현재도 원장에 6월달 것은 연필로 기재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분들이 가지고 오신 통장이 기금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네요. 하나가 아니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하나는 상업은행이 한빛은행으로 바뀌어 가지고 통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李東奎委員 상업은행이 한빛은행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한빛으로 넘겼다 이거죠?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예.

○李東奎委員 여기에서 원장하고 통장하고 틀린 이유가 됩니까? 그 내역을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委員長님! 이것은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밝힐 일이 있으니까 시간을 더 주십시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확인해 보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빨리 직원 좀 오라고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명예구청장이 28분, 명예동장이 111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됩니까? 53쪽 명예구청장하고 명예동장들이 하는 일이

○總務課長 李東明 總務課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구청장 제도 시행배경은 우리 주민에게 구정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에 도움이 될까 해서 '85년 관선시절부터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7년도에 조금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실적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명예구청장을 모셨으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에 대한 조언을 했든지 아니면 개선책을 내놨든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구청장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에나 와서 단상에나 앉으려고 하는 것만 있지 특별한 것을 못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개 동에 1명이면 19명이야지 28명이나 돼요? 1개 동에 2명 짜리도 있어요?

○總務課長 李東明 원래 1명씩으로 하다가 명예구청장 회의나 우리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을 해촉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분씩 받아 가지고 두 명인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명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성이 없죠. 만약에 명예구청장이 필요해서 한다면 1개 동에 한 분씩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조금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그 자리를 보충해서 하고 그러면 인원만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명예동장들은 동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總務課長 李東明 명예동장 제도시행도 명예구청장 시행배경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명예구청장이 있다고 그러면 하루라도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구청에 출근해서 우리 구청장이 하는 업무를 각 과별로 돌아다니면서 한번이라도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봉사실에 앉아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든지 이런 활성화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어떤 행사장에 초청대상이나 되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집 앞에 보면 민원함인가 있는데 그 민원함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있어요? 실적이 얼마나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요. 그 민원함을 수거해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總務課長 李東明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구청장 제도 운영 활성화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아직 집계를

○洪起瑞委員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집계를 안한 게 아니라 한 건도 없어요. 괜히 명예구청장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걸어만 놔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 놔으면 이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구상을 해야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어느 행사장에 가보면 명예구청장입네 해 가지고 단상에나 앉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구청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명예구청장이면 28명이니까 매일 출근을 한다 해도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종로구청에 출근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 민원실도 가서 보고 아니면 현장도 다녀보면서 이분들이 구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 이 명예구청장이 필요한 거지 그저 명예구청장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 활성화도 없이 그저 이분들이 회비 낸 것으로 격려금 100만원, TV 한 대 30만원 이런 일을 해 가지고 명예구청장이 활성화되었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아니면 조치를 하고

○總務課長 李東明 예.

○洪起瑞委員 그리고 현재 우리 종로통을 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과에서 걸어놓은 플래카드, 지난번에 우리 시민행정 위원장이신 李憲九 委員長님께서도 종로통에 플래카드가 난립하니까 될 수 있으면 플래카드 붙이는 것을 지양해달라는 것을 구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플래카드 하나 제작하는데 보통 듣기로는 장당 1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플래카드 제작비가

○總務課長 李東明 플래카드 제작비는 규격이나 글자수에 따라서, 색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洪起瑞委員 보통 보면 1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다고 그러던데

○總務課長 李東明 흰색 바탕에 글씨 쓴 것은 칠팔 만원 선으로 봅니다.

○洪起瑞委員 몇 m예요?

○總務課長 李東明 저희는 실제적으로 플래카드 광고는 도시계획과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부착하는 부서도 많이 다릅니다.

○洪起瑞委員 아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잘 알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한번 해봐요. 플래카드 한 장에 10m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企劃豫算課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예산편성은 보통 개당 평균 1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주관 부서에서 내용에 따라서 규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보통 12m짜리를 칠팔 만원 선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재무건설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모의원이 플래카드 제작비 나간 것을 보니까 대부분 10만원씩 나간 것으로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도 플래카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올 때 보통 m당 3,000원이에요. 그러면 10m해봐야 3만원이고 12m 해봐야 3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구청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더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더 싸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企劃豫算課長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제작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게시를 하려면 인건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어주고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10만원, 칠팔 만원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과장님! 우리 종로구청에 기능직, 상용직 인부들이 많이 있어요. 각 과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계첩을 하라고 그러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장당에 1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10여 m짜리면 3만 6,00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6만 4,000원 들어간다는 얘기네 인건비가 6만 4,000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각 과별로 있잖아요. 상용인부랄까 기능직 인부들이 구청에서 별 하는 일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 하려고 해도 안 나가서 못하고 아까도 민원실에서 데모하는 것을 봤지만 일거리를 줘서 일을 많이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예산 낭비를 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지양을 하세요.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예산절감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그것이 사실 각 과별로 사정이 다르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직접 걸고 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겪은 것도 있는데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할 때 플래카드를 업자한테 맡겼는데 지방에 공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제작만 해놓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달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 가지고 나중에 치료비도 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洪起瑞委員 과장님! 우리 새마을 하는 국장은 기술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다 달아요. 어떻게 공무원들은 그것을 하다가 떨어진대요? 더군다나 사다리차도 있을 텐데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양해해 주십시오.

○洪起瑞委員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저 책상에 편안하게 앉아 가지고 하려는 것을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그만 것에서부터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 委員長님! 너무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안합니다. 명예구청장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납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 있는 6급에서부터 4급의 공무원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제가 한마디, 지난달 사직동에서 게이트볼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청을 받아서 오래간만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식이 막 시작을 하는데 나는 그냥 참석만 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종로구의회 의장상을 의장님도 안 오시고 부의장님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시민행정위원장 아무개가 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나가서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제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대회장이신 황영한 여사님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분의 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장 대신에 축사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회자 왈 '시간관계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대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최되게 되어 있는 대회입니다. 거기에 李秀傑 課長도 옆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생활복지국 소관 林星圭 課長 여기 앉아 있네. 삼청동 어린이집 개관식 행사에 吳錦南 副議長, 千相旭 議員, 저 이렇게 셋이 갔는데 거기서는 사회자인 林星圭 課長이 吳錦南 副議長에게 인사를 하게끔 하고 또 거기 출신인 千相旭 議員께도 인사를 하게끔 배려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작년에 현대건설에서 하는 구민의 날 행사에 의원님들의 표시가 붙어있는 걸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앉아있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명예구청장, 직능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다리를 올려놓고 앉아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부 뒷전에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월 9일날 중앙고등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뒷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더 무시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돈이 몇 푼 있으니까 직능단체장에 있고 또 생활체육회장이 된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을 그렇게 대우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올라와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한테 사무국장이 있는 데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못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홀대를 받는 것 아니냐 말이야 제가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제발 여러분들 오늘 수감태도를 봐도 여러분들은 공부도 안 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업무과약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의원님들을 행사에 오라고 해놓고 그렇게 홀대를 합니까?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하고 洪起瑞 議員하고 吳弼

根議員하고 이제 7월 5일이면 우리는 그 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제2건 국추진위원회 회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해체해 버리든지 말도 안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李秀傑 課長님! 구청장을 앞세우려면 주위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아직 문화진흥과 자료 안 왔어요?

(○安載弘委員 議席에서 - 李委員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하도록 1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李東奎委員 그렇게 하세요.

(○安載弘委員 議席에서 -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에 林課長 답변도 이 페이지를 보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말이죠. 지금 부르는 자료를 30분내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팔각정 그 다음에 휴게소 1,2의 예정가, '99년도 똑같습니다. 팔각정에만 예정가를 갖다주시고 2000년도 주차장과 팔각정에 대한 예정가를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가능하면 원본 아니면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우리 總務課長님 아니면 行政管理局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집행내역 중에 말이죠. 각 동별로 보안등 수리비 명목으로 관리비입니다. 보안등 관리비 명목으로 '99년도에 총계 나간 것이 지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 알다시피 그 집행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배경액이 1억 2,840만원을 배정을 했고 거기서 집행된 금액이 1억 1,374만 7,2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고친 건수가 3,860건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년에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 중에 보안등 관리비만 집행되는 것이 1억 2

천에서 1억 3천 정도의 규모가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보시죠.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것 뽑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 부분은 예산서에서 지울까 하는데 말씀 좀 해보시죠.

○總務課長 李東明 總務課長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안등 관리비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동 소규모사업비에서 나가고 관리는 토목과 기전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도를 하는데

○李東奎委員 이원화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일원화로 해야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總務課長 李東明 설치 및 관리는 토목과장 소관이고

○李東奎委員 그러면 설치만 토목과로 하고 관리는 총무과로 가져와야죠. 잘못된 겁니다. 설치 및 관리를 토목과에서 한다면 이원화될 수밖에 없죠.

○總務課長 李東明 관리도 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직제상 기술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이 예산이 우리 총무과 소규모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모순이다 이거죠. 그래서 토목과로 넘겨주든지 총무과에서 받든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이 보안등 관리는 동기능 전환과 관계되어서 구청사무로 이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예산도 토목과에서 세우고 관리, 보수, 신규설치 다 토목과장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토목과로 넘길 수 있다니까 앞으로 한 군데로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적절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데 지금 1개당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대충이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1개당 설치되는 금액 대충 모르세요?

뒤의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그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李東奎委員 약 칠팔만원 먹힙니다. 한 개에 7만 4,100원이 소요되었답니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런데 1년에 그 한 개를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약 삼사만원 3만 칠팔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 데 칠팔만원 소요되는 비용을, 한 개 관리하는 데에 1년에 삼사만원 소요된다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2년이면 하나 설치해버릴 비용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토목과로 전부 이관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이라도 넘어가기 전이라도 이 부분은 한번 문제시 해서 이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어떤 개념을 바꿔 가지고 보안등 관리 문제를 짚어보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總務課長 李東明 토목과장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보안등 관리에 개선점이나 또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리고 지금 동감사를 해보니까 이 가격이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낭비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것이 일관되게 구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면 비용이 싸게 먹힐 뿐더러 그런 불필요한 사항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안등을 1년이면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말이 그렇지 1억 삼사천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전국 규모로 합쳐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소요되는 경장적 경비의 많은 %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대폭 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자료를 문화진흥과에서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계속 미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가 묘하게 돌아가는 게 이자 일수가 계산이 되는데요 묘한 사항이 '99년 11월 5일날 들어가고 또 '99년 11월 20일날 이자가 들어가고, 12월 3일날 이자가

들어가고, 2000년 1월 4일 이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자가 들어가요. 좀 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검토표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못 가져오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계액도 달라요. 국장님! 제가 원장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비교를 해보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총계액이 이자 잔고액하고 세출수납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장하고 틀려요. 자료를 이렇게 안 갖다주세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그러니까 자료를 올릴 때 제대로 올려줬으면 이런 폐단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8 내지 9% 이자가 나온다는 것은 기금에 대한 이자를 확인해 보니까 5%도 안돼요. 그러면 아무런 조사도 없이 감사자료를 올린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憲九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었어요?

○企劃豫算課長 林晳宅 예, 지금 팩스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李東奎委員 위원장님! 아무래도 자료가 좀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저희 일정상 양해가 주어진다면 10분만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委員長 李憲九 아니, 그럴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 때도 그랬고 감사 때도 그랬고 거듭 얘기했는데 지금 종로구 후생복지위원회 기금이 있습니까? 후생복지회의 기금사업이, 그러니까 후생복지회가 기금사업으로 하나구요?

○總務課長 李東明 원래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라면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기금으로 안되어 있고 규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다고 봐도 좋겠죠? 우리 사랑방매점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제대로 세외

수입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總務課長 李東明** 예, 인정합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로구 후생복지위원회 자체를 규칙으로 하지 말고 기금 운영으로 해서 매점수입도 기금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게 어때요? 조례로 만들어서

○**總務課長 李東明** 지금 조금 전에 다른 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기금관리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사랑방 운영은 우리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비중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랑방매점 수입에 대해서 매점 수입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설사 그것이 공익을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수입은 경영수익 차원에서라도 세외수입으로 편입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제1차 추경에서도 세외수입으로 바르게 안했다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그러한 상태로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자금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투명하고 완전히 보이는 행정, 모든 세입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 취지에 맞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장이잖아요? 감사장이고 지금 과장께서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여기가 협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감사장이니까 앞으로 이 매점수입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계속해서 후생복지위원회의 자금으로 쓰실 건지 그 답변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협의를 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죠.

○**總務課長 李東明** 저희가 이게 수차에 걸쳐서 사랑방 매점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기금으로 할 것인가

세외수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 규칙으로 할 것인가,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사례나 시청의 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계속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십니까? 그러면 회계처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總務課長 李東明**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게 타구 사례나 시청 사례나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 규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잘못되었느냐 잘못 안되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總務課長 李東明** 예, 그것은 잘 지적해주셨듯이 예산총계주의에 반한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安載弘委員** 잘못되었어요?

○**總務課長 李東明** 예.

○**安載弘委員**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당장 고쳐야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친다면

○**總務課長 李東明**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간을 갖고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보고드릴 겁니다.

○**安載弘委員**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앞으로 계속 협의하겠지만 금년말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금년말까지는 그냥 후생복지위원회 수입으로 잡고?

○**總務課長 李東明** 그 얘기가 아니고 금년말까지는 아주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아주 최선의 방법으로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잡으려면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잡아야죠. 그러면 그것이 금년말이 아니라 8월이나 7월 중에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목으로 잡는

○**總務課長 李東明** 그 관계는 예산 부서와 협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安載弘委員 예산 부서가 거기 있는데 뭐. 그러지 말고 과장님!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써요. 세외수입으로 잡고 구내식당 운영비 모자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요. 자치시대에서 행자부의 예산 기본지침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직원 후생으로 쓰는데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식비가 모자라니까 직원들 후생복지에 썼다고,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 심의를 거쳤다고 감사 나오면 담당이 얘기하세요.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설명을 드렸더니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더라 지방자치 시대니까 그렇게 담당하게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總務課長 李東明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경비는 법정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 외 가산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예산편성도 안되고 불법은 저질러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그냥 눈 감아요?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감사장이라면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굳이 안 고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켜봐 주십시오.

○安載弘委員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總務課長 李東明 저희가 실제 수익금이 판매원 여직원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저희가 수익금 중에서 구내식당에 보조를 일부를 하고 추석 명절과 구정 명절에 직원들한테 격려품으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추석과 구정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安載弘委員 답변이 그러면 매점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하나요?

○總務課長 李東明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데

○總務課長 李東明 매점의 판매 여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논리가 그런 논리네요. 적어도 후생복지위원회 경비로 직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무난하다는 것보다도 당초 시작이 사랑방 재산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 위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리는 문화진흥과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있고 그 매점 관리만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적자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감수하고 저희 구청에서 계속 특수한 관계에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겁니다.

○安載弘委員 세출 잡으시는 것하고 공공성 유지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입으로 잡는 것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하고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산서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예산서 상에는 문화진흥과에 예산 일부가 잡혀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매점이 아닌 안내하는 여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安載弘委員 총무과장님! 조금 이따가 자료를 찾아가시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원회의 '99년도 결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서를 한번 봅시다.

○總務課長 李東明 예.

○委員長 李憲九 장시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 대신 10분 안에 모두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 10분 안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2分 會議中止)

(16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종로구청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금의 금액이 틀린 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수납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통장하고 틀린 금액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대로 장부 정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40만원은 5월 30일로 이자 이체금인데 저희 장부에 기재가 누락이 되어서

○李東奎委員 5월 며칠이라구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5월 30일

○李東奎委員 똑바로 알고 계세요. 5월 24일인데 왜 30일로 하세요? 계속 하세요.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40만원 누락은 그렇게 해서 저희 장부에 기재가 안되어 가지고 차액이 났음을 말씀드립니다.

○李東奎委員 5월말 현재로 자료를 해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왜 5월말까지 한 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올라옵니까? 얼마나 우리 의회를 경시했으면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5월말 현재 모든 상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자료를 뽑아서 가져왔는데 틀리길래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5월말 이전 것이 누락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습니까? 뭐라고 좀 말씀하세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자료가 다소 미스가 된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장부 정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이건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걸면 징계감이에요. 문화진흥과장님! 잘 들으세요. 얼마나 우리 의회를 경시했으면 이런 행동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징계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명심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야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급급해 가지고 그저 궁색한 답변해주시기 바쁘고 말이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왜 고생하면서 빛을 못 났을까? 여러분들이 전부 하는 일들이 눈 감고 또는 수박 겉핥기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전부 눈 뜬 봉사들만 와있고 종로구청에 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예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요구한 사항일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요구했었고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이런 자료를 앞으로 주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李東奎委員 발언 중에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의원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하게끔 건의하겠다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총무과장님! 조금 전 그 구내식당 운영 결산서를 잠깐 봐주실래요? 맨 아래 후생복지회라고 해가지고 잡비로 4,978만원을 쓰시잖아요? 그것은 후생복지라는 게 결국은 직원들한테 연말이나 연초에 기념품을 주는 건가요? 이

게 뭔가요?

○總務課長 李東明 작년도 결산 4,978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安載弘委員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 연말이나 연초에 기념품 주는 것 그건가요?

○總務課長 李東明 예, 작년 9월 21일날 추석 직원 격려품 구매비 2,95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내역입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운영 결산서를 보면 말이죠 맨 아래 칸에 계가 5,092만 2,000원이 잉여금입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 그것은 작년도 총 손익계산을 해본 수익금으로 보면 됩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직원 후생복지로 해서 기념품값 지급하고도 5,000만원 정도가 잉여되었다는 얘깁니까? 작년에 남았다는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효자동사랑방 매점수익 4,000만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말씀이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작년 한 해만 두고 보면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지금 사랑방 매점 운영 수입은 세입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게 또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그런데 금년 5월말까지 수입으로 봐가지고 사랑방 수입은 계절에 따라 다르고 또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청와대를 개방해 가지고 수익이 좀 올랐지 금년부터 다시 수입이 떨어집니다.

○安載弘委員 왜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사랑방을 찾는 관광객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선물을 거기에서 우리 매점에서 사가는 분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 매점 수입이 줄까요?

○總務課長 李東明 관광객 숫자가 처음에 청와대 개방했을 때는 많이 오셨는데 어느 정도 순회하신 분들은 또 안 오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하여간 지금 후생복지위원회 운영이 이 사랑방 매점 운영 수입에 대해서는 좀 서로 의회하고 의견을 자주 교환해서 의원들 스스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좋아지기를 바라지 나빠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후생복지를 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직원들이 바라는 바가 그것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일관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앞으로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었죠? 목적에 보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먼저 제가 구정질문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보시죠.

○總務課長 李東明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의 문제점으로 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 명칭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자격의 문제가 조금 거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安載弘委員 제가 볼 때는 이래요. 행자부의 기본준칙안은 소위 근거법이 지방자치법 제8조거든요. 8조의 내용은 포괄적인 의미예요. 주민자치센터 스스로가 조직이나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타 사무처리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화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먼저 회기 중에 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너무 행자부의 준칙(안)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자치센터 설립이 순수하게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향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많은 자치단체의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착단계까지는 그 준칙(안)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安載弘委員**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명칭하고 위원장의 문제,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자치법 제8조는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1항에 되어 있고 2항은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사실 중요한 골자는 없어요. 물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행자부의 기본 준칙(안)이 더러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을 따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주민자치센터라는 그 명칭 자체가 혼동이 오게 합니다. 목적에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자치센터라는 개념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의나 원칙 기타 자치센터의 설치에 들어가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주민복지센터나 주민문화복지센터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부수적인 다른 조항들의 문제들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적어도 도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은 구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일정한 지역 안의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그 지역의 지방자치 위원장이 된다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적습니다. 동기능 전환을 하게 되면 동장의 지위는 물론 직급의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직원을 두고 있다가 적어도 50% 이상이 조정이 된

다 하더라도 그 직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면 적어도 대표성을 가진 그 지역의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센터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總務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입장과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집행부의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동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신다면 자치센터가 입법기관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입법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로 보면 권력분립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安載弘委員**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취지에는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도 동장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행자부의 기본지침이 잘못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굳이 준칙(안)을 계속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있는 동에 관련된 동발전협의회라든지 그런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동장이 위촉해서 어떤 그 지역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문화프로그램이나 어떤 강좌를 중심으로 본다면 두 가지 중의 하나다 이거죠. 명칭을 개선해서 문화복지센터로 변경을 해버리든지 또는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이 운영조례는 상당히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회에 의안을 상정하셨나요?

○**委員長 李憲九** 아직 안올렸습니다.

○**安載弘委員** 아직 안올렸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설치조례 기타 기능이 10월까지로 마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總務課長 李東明** 그 내용은 우리 이관사무 또 동에서 그대로 존치사무, 사무이관하고 존치를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형편에 따라서 동청사가 완전히 보수되고 우리 조례가 제일 시급한 것은 사실 조례입니다.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조례에 맞게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기능전환은 9월말까지 우리가 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9월까지 완료를 하고 10월부터 시행을 한다.

○**總務課長 李東明** 업무처리

○**安載弘委員** 기능전환이 그렇게 되면 자치센터로 다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10월에는

○**總務課長 李東明** 예.

○**安載弘委員**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가능하지 않다고 보냐면 조례가 완결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2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처리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있나요?

○**總務課長 李東明**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성동구가 시범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처음 시행하는 담당과장하고 토의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치센터 정원입니다. 지금 직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이 늘어서 7명에서 9명인데 실제로 성동구 전 동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2명에서 3명이 초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차량도 각동에 나가있는 상태이고, 원래 행자부 지침대로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성동구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계속 보완해 가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을 또 행자부에 건의했고 또 우리 일선 공무원도 수시로 운영의 문제점을 행자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우리 조례제정과 관

련해서는 계속 협의를 드리고 좋은 방법이 없는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제 질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되어서 의결이 되기 전까지는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죠?

○**總務課長 李東明**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라 함은 하드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를 고치고 하는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어떻게 가능해요? 여기 6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조례 없이 어떻게

○**總務課長 李東明** 그것은 프로그램에

○**安載弘委員** 아니,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입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의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으로 기능전환에 대한 예산을 이미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승인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고

○**安載弘委員** 잘못되었죠.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모든 예산의 집행은 근거가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산심의 잘못된 거예요. 소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總務課長 李東明**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논란이 있어요. 하여간 이 자치센터의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니까 꼭 집행부의 의견을, 행자부의 준칙을 고집하지 마시고 좀더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지시고 이렇게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안)을 만들도록 권고드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설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이 되었다하더라도 솔직하게 개개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의 근거가 없다면 집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편 예산도 보조금이 되었든 임의보조금이 되었든 그 집행의 분명한 근거, 조례 또는 상위법이 없는 한 그것은 안됩니다. 예산편성은 할 수 있어요.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할 수는 있지만 그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는 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總務課長 李東明 저는 예산의 효력도 조례나 법률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하여간 그 문제는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아무튼 주민자치센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가지고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安載弘委員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본청하고도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음에라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예.

○委員長 李憲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28일 내일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時54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9人

李憲九 安載弘 鄭泰淳 千相旭
劉燦鍾 朴鍾植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總務課長 李東明

企劃豫算課長 林啞宅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文化振興課長 李秀傑

旅券課長 任炯正